

박 사 학 위 논 문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김 윤 진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용식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dit Fee and Characteristics
of Unlisted Voluntary K-IFRS Adopters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김 윤 진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용식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dit Fee and Characteristics
of Unlisted Voluntary K-IFRS Adopters

위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김 윤 진

김윤진의 경영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계학전공

김 윤 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범위 및 감사위험 증대로 감사 투입시간을 증가시키고 보다 많은 감사보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향상되고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쉽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해외증시에 대한 신규 진출도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비상장기업들은 재무제표 이중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를 감사보수 결정모형에 따라 검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에 감사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에 비해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등이 양호하며 Big4와 같이 대형회계법인과의 감사체결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면서, 감사보수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연도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 연도에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신규 상장 예정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여부에 대한 검증결과도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였다. 다만, 본 연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당해연도 한 해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요어】 감사보수,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제 3 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과 경과	7
1.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	7
2. 도입 경과 및 평가	9
3.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10
제 2 절 우리나라의 감사보수 및 감사인선임 제도 현황	12
1. 감사보수 제도	12
2. 감사인선임 제도	15
제 3 장 선행 연구의 개관	16
제 1 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	16
1. 국내 선행연구	16
2. 해외 선행연구	19
제 2 절 IFRS 도입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25
1. 국내 선행연구	25
2. 해외 선행연구	27

제 3 절	IFRS 도입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31
제 4 장	연구 설계	37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38
1.	감사보수와 관련된 연구가설	38
2.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설	41
제 2 절	표본의 선정	43
제 3 절	연구모형의 설정	45
1.	〈가설1〉, 〈가설2〉, 〈가설3〉 및 〈가설4〉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48
2.	〈가설 5〉와 〈가설 6〉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1
제 5 장	실증분석	53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및 단변량 분석 결과	53
1.	기술통계 분석	53
2.	단변량 분석	62
3.	상관관계 분석	68
제 2 절	가설 검증 결과	76
1.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76
2.	〈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77
3.	〈가설 4〉에 대한 검증 결과	78
4.	〈가설 5〉와 〈가설 6〉에 대한 검증 결과	80
제 3 절	추가 분석	82
1.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연도(2010년)와의 비교	82

2. 대응표본에 의한 분석	84
3. 업종별 분석	87
4.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분석	88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90
제 6 장 결 론	9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9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92
【참고문헌】	94
ABSTRACT	101

【 표 목 차 】

〈표 1-1〉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현황	2
〈표 2-1〉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현황	8
〈표 2-2〉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일정	9
〈표 2-3〉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현황	9
〈표 2-4〉 IFRS와 K-GAAP의 주요 차이점	11
〈표 2-5〉 기본보수의 결정	12
〈표 2-6〉 회계감사보수(개별재무제표) 산출방식	13
〈표 2-7〉 회계법인 및 회계사 추이	14
〈표 4-1〉 표본 선정 현황	43
〈표 4-2〉 표본의 산업별 분포	44
〈표 4-3〉 감사보수에 미치는 요인	46
〈표 4-4〉 비상장기업의 K-IFRS 도입 가능성	47
〈표 5-1〉 기술통계	55
〈표 5-2〉 감사보수에 대한 기술통계	60
〈표 5-3〉 단변량분석(가설1-2009년 기준)	63
〈표 5-4〉 단변량분석(가설2-2011년 기준)	64
〈표 5-5〉 단변량분석(가설3-도입기업)	66
〈표 5-6〉 단변량분석(가설4-미도입기업)	67
〈표 5-7〉 상관관계 분석	70
〈표 5-8〉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가설1~4 검증결과)	79
〈표 5-9〉 종속기업 또는 상장예정기업 여부가 IFRS 도입에 미치는 영향(가설5, 가설6 검증결과)	81
〈표 5-10〉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2010년과 비교분석)	83
〈표 5-11〉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2009년 대응분석)	85
〈표 5-12〉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2011년 대응분석)	86
〈표 5-13〉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업종별 분석)	87
〈표 5-14〉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물가상승률 분석)	89

【 그림 목 차 】

〈그림 4-1〉 실증분석의 체계도	37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기업회계부문에 있어서도 IMF, IBRD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독립된 회계기준 제정을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99.9월) 하였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입('05.1.1)¹⁾, 감사인 독립성 강화²⁾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³⁾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우리나라 재무정보의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국제회계기준(K-IFRS)⁴⁾을 도입하기로 하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도록 되었으며, 2009년부터 조기도입이 허용되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2011년부터 우리나라 회계처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되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이 구체적이고 규정중심적(rule-based)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면, 국제회계기준은 일반적이고 원칙중심적(principle-based)인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적용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업무에 더 많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정영기, 2012). 국제회계기

1) 법 시행일('05.1.1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부터 적용.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코스닥법인은 '07.1.1부터 적용되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05.1.1부터 적용

2) 감사위원회 승인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인 유지, 감사인 순환,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및 감사인 지정(IPO 준비, 법정관리, 감사인 지정 요건) 등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전문가 참여로 구성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상장대기업은 '06.1.1이후 개시사업연도,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은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4)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번역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채택하여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제회계기준과 K-IFRS는 구분없이 사용

준은 금융상품 및 금융부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확정급여채무 등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연결재무제표⁵⁾를 기본재무제표로 함으로써 감사인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킨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적용으로 감사인의 감사 범위가 더 넓어지고 감사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영기, 2012; 이명곤 등, 2012).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감사인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험을 높게 평가하게 되며, 변경된 회계기준이 최초 적용되어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감사업무에 더 많은 감사인의 노력이 수반됨으로써 감사시간이 더 늘어 날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시간이 늘어난 만큼 감사보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789개사로 전체 상장법인의 45.6%에 불과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된 2011년에는 1,145개로 전체 상장법인의 72.1%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1,171개(73.4%)로 증가하였다.

〈표1-1〉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009년(비중)		2010년(비중)		2011년(비중)		2012년(비중)	
유가증권	454	64.0	415	65.6	524	80.2	518	79.7
코스닥	334	32.7	329	35.2	621	66.4	653	69.1
합계	789	45.6	744	47.5	1,145	72.1	1,171	73.4

* 비중=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수/ 상장법인 전체수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등 감사보수 증가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의무도입 기업이

5) IFRS에서는 지분을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가 30%초과 최대주주에서 50% 초과 주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가 달라짐. 따라서 지분율이 30%~50%이면서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거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질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닌 비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석결과⁶⁾처럼 지배·종속기업간 회계기준 일치, 상장추진 등 도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이우재 등, 2011).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가장 중요한 효익은 첫째,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여 투자자들이 역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며, 둘째,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회계기준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국가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비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이용자간의 의사소통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주가반응을 살펴 본 결과(전영순·정도진, 200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의 IFRS 도입관련 16개 사건에 대한 유럽주식시장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Armstrong and Barth, 2010)에서도 IFRS 도입 이전에 낮은 정보의 질과 높은 정보비대칭 유럽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IFRS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감사보수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감사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의 감사보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자율적인 감사보수계약이 도입되면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따라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사보수는 제공한 감사서비스의 투입량에 따라 보상받게 되어 보다 양질의 감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적 감사보수 계약의 효과는 양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감사보수체계가 자율화되었다 하더라도 고품질 감사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감사시장은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이 되어 감사보수가 실제 감사투입량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인간의 과당경쟁을 야기하여 감사수수료 덤핑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6)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이 2010년 152개사에서 2012년말 3,156개사로 증가한 것은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가 지배·종속기업간 회계기준 일치, 상장추진 등을 위하 K-IFRS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보도자료, 2013.7월)

서 감사인은 구 감사보수체계 하에서 보장되던 최소한의 감사보수보다도 더 낮은 감사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감사보수제도의 자율화가 오히려 감사인의 적절한 감사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보수 자율화조치의 실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금융감독원에서도 매년 회계법인의 감사수입 통계를 발표하여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적절한 감사보수 수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상장기업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였을 것으로 간주하고⁷⁾, 비상장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종속기업 또는 상장 예정기업이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을 분석하거나(이우재 등, 2011),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이명곤 등, 2012),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사유와 감사보수의 변화를 연구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감사수입료는 일반적으로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기업 특성에 따른 감사투입 시간, 감사위험과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감사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특성은 업종(제조, 건설, 서비스, 금융 등), 내부통제 수준, 상장 여부, 자산규모, 적용회계기준(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감사인 선임 유형(자유선임 또는 감사인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특수목적기업(SPC) 여부 등을 들 수 있으며, 감사인 특성은 감사인의 규모, 품질관리수준, 명성,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 등을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

7) 2012년중 신규 상장기업(코스닥 포함) 55개사 중에는 2011년에 IFRS를 도입한 기업이 없었으나, 2013년중 신규 상장기업 34개중 5개사가 2011년에 IFRS를 도입한 기업이었으며, 2013.11월 현재 상장기업(코스닥 포함)은 1,776개사이나 2013년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은 2,653개사인 점을 볼 때 상당수 연결대상기업이 IFRS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장 추진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됨

체결보고서를 제출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2009년)과 도입 후(2011년) 감사보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중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감사보수와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기업(국제회계기준 미도입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하여 도입기업의 감사보수가 미도입기업에 비해 더 큰 지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은 해외에 상장된 기업, 해외매출이 많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Gassen and Sellhorn, 2006) 이거나, 대형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기업(Guerreiro et al., 2008)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곤 등(2012), 정영기(2012) 등의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여부가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기업규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감사위험과 Big4⁸⁾ 회계법인 여부, 초도감사 여부 등 감사인의 특징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1년의 감사보수 증가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것인지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비슷한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을 2개씩 대응표본으로 선정하여 표본과 대응표본 간의 감사보수 차이를 추가 검증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통제 한 이후에도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내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 모회사와의 연결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속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는지를 검증하였으며, 2012년 및 2013년중 신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자발적 도입 원인이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인지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는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는지 등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에

8) '13.6월말 현재 국내 회계법인은 132개, 감사반은 253개 있으며, 이중 4대 회계법인(Big4)은 삼일, 안진, 삼정, 한영회계법인 등 감사인 규모가 크고 국제적 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대형회계 법인을 말함. 본 논문에서 언급된 Big5, Big6, Big8 등은 연구 당시 해당 국가의 대형 회계법인을 말함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과 경과, 우리나라의 감사보수 및 감사인선임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친 영향과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표본을 선정하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제5장에서는 실증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서로 구성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과 경과

1.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2006년 2월 정부, 감독기구, 회계기준원, 기업대표, 회계법인, 학계 등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구성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1년여 간의 준비를 하였으며, 2007년 3월에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공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상장기업⁹⁾에 대해 그 동안의 기업회계기준(K-GAAP)을 포기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회계투명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으므로 정부는 국내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독립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99.9월)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왔으며, 기업회계기준 제정시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상당 부분 향상 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되어 회계투명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회계기준 미흡이라는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한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향상되고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서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둘째, 전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자본시장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007년 3월 당시 이미 유럽연합국가(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거나 수용예정이어서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다.

셋째, 국제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었다. 국내기업이 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별도로 받게 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미 대부분의 해외증시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K-GAAP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다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에 대한 신규 진출도 훨씬 활발해 질 수 있었다.

참고로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현황(국가별 중복 상장 포함)을 보면 2012.3월말 기준으로 미국 10개사, 일본 11개사, 유럽 34개사, 동남아 42개사 등 98개사가 상장되어, '10.6월말의 25개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현황

(단위 : 개)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기타	계
'10.6월말기준	9	1	14	1	-	25
'12.3월말기준	10	11	34	42	1	98*
증가	1	10	20	41	1	73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3.7.4)

* 국가별 중복 : 주식 21사, 주식-채권 10사, 채권 33사 등 64개사가 미국 등 9개국 상장

2. 도입 경과 및 평가

2007년 3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회사는 금융회사간 회계기준 통일을 위해 조기적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비상장기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보다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되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2〉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일정

구 분		~2008년	2009~2010년	2011~2012년	2013년~
IFRS 조기적용기업		기업회계기준(K-GAAP) (분·반기 연결의무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기업	2조원 이상			(분·반기 연결의무 無)	
	2조원 미만				
기타 비상장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2010년 152개사가 조기도입한 이후 2012년말 기준으로 총 3,156개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이 되고 있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도 1,479개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지배·종속기업간 회계기준 일치, 상장추진 등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⁰⁾.

〈표2-3〉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현황

(12월 결산법인 기준, 단위 : 개)

구분	조기 도입		본격 도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의무 적용 기업*	14	60	1,709	1,677
자발적 적용 기업	19	92	1,142	1,479
합계	33	152	2,851	3,156

* 상장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7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정착 노력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재무사항 공시 충실성이 크게 개선되어, 2011년에는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비중이 18%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유럽증시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K-IFRS를 적용한 외국상장 국내기업 등은 외국기준에 따른 차이조정 의무가 면제되어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해외투자 유치, 해외수주 활동, 수출 등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으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제시함에 따라 재무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해졌다. 또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확대 등으로 보다 목적 적합하고 적시성있는 재무제표를 제공 가능하게 되었다.

반대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국내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부담은 증가한 반면,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효익은 미흡하며, 회계처리 재량권 확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고 계정과목 순서나 형식을 정하지 않은 손익내용의 간략 표시 등은 과거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었으며,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회계처리, 실질 지배력에 의한 연결범위 판단 등 회계기준의 복잡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국제회계기준(IFRS)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K-GAAP)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체계이다. 회계담당자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K-GAAP이나 미국회계기준(US-GAAP)이 법률관계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중심(rule-based)의 기준체계인

것과 차이가 있다. 원칙중심 기준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규율할 수 없어 오히려 규제회피가 쉬워지는 규정중심 기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공시체계가 기존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내부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므로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질이 높아진다. 기말 뿐만아니라 분기 및 반기에도 연결공시가 이루어진다. K-GAAP에서도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으나 개별재무제표 공시후 1개월 후에 부수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GAAP보다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넓어진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시가’보다 넓은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IFRS는 정책적 목적을 배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특정시점에 발행자가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K-GAAP에서는 상법상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환의무와 관계없이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표 2-4〉 IFRS와 K-GAAP의 주요 차이점

항목	국제회계기준	K-GAAP	관련항목
① 회계처리원칙	-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	-규정중심,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제공	기업에 적합한 회계 처리 선택 가능
② 공시체계 차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함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지분법 등
③ 자산·부채의 평가 방법 차이	-공정가치 평가를 강조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원가 평가	투자부동산, 금융 상품, 유형자산 등

제 2 절 우리나라의 감사보수 및 감사인선임 제도 현황

1. 감사보수 제도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5일 공인회계사 감사보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경쟁에 의해 자발적으로 감사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공인회계사법 제14조에 의거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감사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서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감사보수 산출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2-5>는 구 감사보수규정에 따른 기본보수 산정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본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직전연도 자산총액에 비례하여 체감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증가에 따라 감사위험이 체감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사 효율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5> 기본보수의 결정

(단위: 천원)

자산총액 ¹⁾	보 수 액
5억원 이하	3,210
10억원 이하	3,560
30억원 이하	4,780
50억원 이하	5,910
80억원 이하	9,210
120억원 이하	13,550
300억원 이하	16,230
500억원 이하	18,740
1,000억원 이하	21,230
3,000억원 이하	28,540
5,000억원 이하	33,950
1조원 이하	44,160

기본보수에 추가되는 가산보수는 사업장의 수,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 여부, 감사인 변경 여부를 우선 반영하고 외국어 직무수행 또는 외국어 보고서 작성, 반기재무제표 확인 및 의견 표시, 감사를 받지 아니한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2-6>은 기본보수 및 가산보수로 구성되는 감사보수 산출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9년 이전의 감사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감사보수를 결정하되 가산보수로 감사보수를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자산규모를 갖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감사보수의 상한이 달라질 수 있었다. 다만, 가산보수가 감사보수 결정시 감사투입시간을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감사투입시간의 차이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감사보수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표 2-6〉 회계감사보수(개별재무제표) 산출방식

구 분	산 출 방 법	보 수 액
① 기본보수	자산총액 : 백만원	×××
② 사업장수에 따른 가산보수	본사의 사업장 수 : 1개인 경우 ①의 10% 2개인 경우 ①의 15% 3개인 경우 ①의 20% 4개 이상인 경우 ①의 25%	×××
③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가산보수	상장법인 : (①+②)×19% 등록법인 : (①+②)×14%	×××
④ 감사인 변경시 가산보수	(①+②+③)×10%	×××
소 계		×××
<추가조정보수>		
⑤ 외국어직무수행 또는 외국어 보고서 작성 추가보수	(①+②+③+④)×50%	×××
⑥ 반기재무제표 확인 및 의견 표시보수	(①+②+③+④)×10%	×××
⑦ 감사를 받지 아니한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법인의 가산보수	(①+②+③+④)×10%	×××
소 계		×××

감사보수규정의 폐지로 감사보수가 자유화됨에 따라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자율성이 높아진 장점은 있으나 감사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감사수수료의 덩핑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사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권수영·김문철(2001)은 감사보수가 자유화된 이전과 이후를 분석하였는데,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을 통제하고 난 후의 감사보수 평균값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보수 자유화로 감사인 간의 과당경쟁 및 감사보수 덩핑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표 2-7>에서 국내 회계법인 및 회계사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국내 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 수는 2002년말 57개 법인, 3,361명에서 2013.6월말 현재는 132개, 8,83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총 회계사 수는 6,439명에서 16,020명으로 증가하였다. 회계법인별 소속 평균 회계사수는 2002년말 59명에서 2013.6월말 67명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회계법인이 대형화되어 경쟁이 치열해 진 것으로 보인다.

<표2-7> 국내 회계법인 및 회계사 추이

(단위 : 개, 명)

연도	회계법인		감사반		개업 일반	휴업	총계
	감사인	구성원	감사인	구성원			
2002년말	57	3,361	276	1,219	307	1,538	6,439
2003년말	67	3,788	282	1,250	323	1,673	7,034
2004년말	78	4,227	290	1,287	367	1,998	7,879
2005년말	84	5,205	289	1,292	300	2,289	9,086
2006년말	89	5,759	281	1,271	348	2,677	10,055
2007년말	98	6,172	270	1,220	421	3,064	10,877
2008년말	103	6,806	258	1,197	412	3,525	11,940
2009년말	110	7,661	252	1,166	396	3,851	13,074
2010년말	121	7,941	249	1,154	505	4,312	13,912
2011년말	124	8,138	250	1,200	496	4,821	14,655
2012년말	127	8,690	254	1,229	566	5,086	15,571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2. 감사인선임 제도

우리나라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1990.1월부터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982년 2월 “감사인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감사인 선임 방식을 종래의 배정식 추천제도에서 피감사기업에 의한 자유선임 제도로 변경하였다. 자유선임제도하에서는 감사인 상호간의 수임경쟁으로 피감사기업에게 경쟁적으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묵인하게 되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의 선임과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수임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감사기업과 타협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결국 감사인의 의견구매가 가능할 것이다(박상훈 등, 2011).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유수임제도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¹¹⁾. 둘째, 1997.1월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유수임제도하에서는 감사인에 대한 교체 압력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사인 유지제도로 한번 선임된 감사인은 3년간 원칙적으로 교체되지 않으므로 임기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감사인의 임기가 보장되어 감사보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감사품질도 제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감사수임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여 초도감사 계약시 감사보수의 할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노준화 등, 2004).

11) 지정 사유(외감법 § 4의3 및 동법시행령 § 4, 외감규정 § 10)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소유 경영 미분리*

*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25%)이상 소유자)이 대표이사인 회사가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예정
- 회사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요청 등

제 3 장 선행 연구의 개관

제 1 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

1. 국내 선행연구

1999년 감사보수체계가 자율화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외부감사 보수체계¹²⁾는 낮은 보수수준 및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권수영·김문철(2001)은 1994~1999년의 표본기간에 대해 감사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감사보수자료를 기초로 감사보수모형을 추정하고 이 모형을 기초로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보수의 변동 및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 기간에도 Big6 제휴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국내법인의 감사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보수 자율화조치로 인하여 감사보수의 평균값은 증가하였으나 제반 감사보수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보수의 자율화 이후 감사보수의 변동은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액의 비중과 같은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감사인의 평판 등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에 감사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감사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보수 자율화로 감사인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감사보수의 할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세용 등(2005)은 우리나라 감사보수 자율화 시행 이후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기업규모와 해외매출액 비중으로 측정되는 영업의 복잡성은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감사위험과

12) 1999년 2월 공인회계사법 제14조에 의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에 대한 보수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의 감사보수체계는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본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직전연도 자산총액에 비례하여 체계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기본보수에 추가되는 가산보수는 사업장 수, 상장법인(또는 등록법인) 여부, 초도감사 여부,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외국어 직무수행 또는 외국어보고서 작성 여부, 만기재무제표 확인 및 의견 표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

관련하여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를, 평균자산수익률은 음(-)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감사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보수는 증가함을 검증하였다.

권수영 등(2005)은 2000년~2003년을 대상으로 감사보수의 일반적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 감사시간이 감사보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남는지 분석하고, 더 나아가 Big5 제휴법인의 감사보수 프리미엄의 존재 여부와 만일 존재한다면 프리미엄의 원인이 감사에서의 확신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판(reputation)으로 인한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보수결정모형에 감사시간을 포함한 경우에도 Big5 회계법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법인이 받는 감사보수 프리미엄은 국내법인에 비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 외에 Big5 회계법인이 갖고 있는 높은 감사품질에 대한 평판 그 자체에서도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권수영 등(2005)은 감사시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영업장 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 이외에도 상장여부, 감사인 유형, 비감사서비스 및 부채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상훈 등(2011)은 감사보수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자산 규모별로 감사보수 증가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감사보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관·백원선(1998)은 우리나라 감사인의 유형을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으로 나누고 이들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감사보수가 경쟁적으로 결정되는 감사시장에서는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보다 높은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감사인 간에 감사능력이 동일하다면 감사업무수행에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우수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의 감사보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시간에 대한 검증결과는 Big6 제휴법인이 국내법인보다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사보수에 대해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 감사보수규정이 감사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해석하였으며, 감사시간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Big6 제휴 법인이 감사능력이 우수함에도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다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우용상·이호영(2007)은 감사보수와 재무제표의 보수주의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검증한 결과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보수적인 경우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전연도 재무제표가 보수적이면 당해연도 감사보수는 감소하고, 당해연도 감사보수가 증가하면 당해연도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강화되며, 2006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감사보수와 보수주의 회계처리 간의 상호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강내철(2008), 이경태 등(2007), 이명곤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이나 기업실패위험이 높은 경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사보수 결정요인을 국내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비상장기업 모두에 대해 실증 분석한 곽수근·박종일(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 기업규모, Big4 감사인 여부, 초도감사 여부, 감시인 지정 여부, 영문재무제표 작성 여부, 내부회계검토 대상 여부,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전기보다 주식 및 사채발생액의 증가 여부, 매출액 성장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Big4 감사인에 대한 프리미엄 또한 시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피감사기업의 개별적인 특성 이외에도 1999년부터 국내에서 감사보수가 자율화되면서 감사인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감사보수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고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권수영·김문철, 2001). 특히 Chan(1999)과 이상철 등(2011)은 감사인이 변경되는 첫 해에는 감사보수 할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인 간의 경쟁심화 현상은 비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피감사기업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명곤 등(200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해외 선행연구

Simunic(1980)은 미국의 Big8 회계법인이 감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감사보수는 감사투입량에 감사투입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결정되므로 Big8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가격과 감사투입량의 일반적 결정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Simunic(1980)은 피감사기업의 총자산, 피감사기업의 영업의 복잡성(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 피감사기업의 사업이 속하는 산업의 수, 총자산에 대한 해외자산 비율 등),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과거 3년간 당기순손실 발생여부 및 감사의견, 현행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감사보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참고〉 Simunic(1980)의 감사보수 결정 모형

$$\begin{aligned} FEE/ASSETS = & \beta_0 + \beta_1 SUBS + \beta_2 DIVERS + \beta_3 FORGN + \beta_4 RECV \\ & + \beta_5 INV + \beta_6 PROFIT + \beta_7 LOSS + \beta_8 SUBJ \\ & + \beta_9 TIME + \beta_{10} AUDITOR + \tilde{u} \end{aligned} \quad 13)$$

Big8 회계법인의 독점 여부는 피감사기업을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Big8 법인과 non-Big8 법인간의 감사보수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피감사기업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한 이유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시시장은 경쟁이 심한데 비해 대기업의 감사시장은 Big8 회계법인에 의한 독점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종속기업의 수, 영업의 다양성, 해외자산의 규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등의 변수들이 감사보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실 발생여부 및 감사의견도 감

13) 변수 설명 및 회귀계수 부호 - SUBS : 종속기업 수(+), DIVERS : 피감사 회사 영업 종 수(+), FORGN : 해외자산 비율(+), RECV : 매출채권(+), INV : 재고자산(+), PROFIT : 총자산이익률(-), LOSS : 과거 3년간 손실 발생여부(+), SUBJ : 감사의견(+), TIME : 현행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 AUDITOR : Big8 여부(피감사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이)

사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시장의 독점 여부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시장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시장 간에 Big8와 non-Big8의 감사보수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Big8 회계법인이 감사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Francis(1984)는 Simunic(1980)의 연구를 호주의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재현하였다. 감사보수모형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피감사기업의 총자산, 종속기업의 수, 유동자산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과거 3년간 손실발생여부, 감사의견, 결산월 등이었다. Simunic(1980)이 사용한 변수 중에서 피감사기업의 사업이 속하는 산업의 수, 해외자산의 규모 및 현행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 등은 자료입수의 어려움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대신 유동자산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감사위험을 반영하는 변수로 당좌비율과 부채비율을 추가하였으며 감사 성수기 및 비수기에 따른 감사보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결산월을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에서는 Big8 회계법인이 non-Big8 회계법인보다 매우 높은 감사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감사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Francis와 Stokes(1986)은 Simunic(1980)과 Francis(1984)의 연구결과가 상이한 원인을 밝히고자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Simunic(1980)의 표본기업이 주로 대기업이었던 반면에 Francis(1984)의 표본기업은 중소기업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연구결과의 차이가 각각 규모가 상이한 표본기업을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호주의 상장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기업 100개와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 100개를 표본기업으로 선정하고, Francis(1984)와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두 기업집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기업집단에서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보수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집단에서는 Big8의 감사보수가 non-Big8의 감사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한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한 감사시장에는 Big8와 non-Big8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Francis와 Simon(1987)은 미국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시장에 있어서

Big8 회계법인과 non-Big8 회계법인간의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Simunic(1980)과 Palmrose(1986)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행하였다. 감사보수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피감사기업의 총자산, 연결대상 종속기업수, 종속기업 전체에서 해외 종속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 감사의견 등이었다. 연구결과 피감사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Big8의 감사보수가 non-Big8의 감사보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 미국의 감사시장에서도 감사인 별로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들은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계속감사에 비해 할인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tanley(2011)는 감사보수와 피감사기업의 미래경영성과 간에 음(-)의 관련성이 존재하며, 피감사기업의 사업위험이 높을 경우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하였다.

Choi et al.(2006)과 Hitash et al.(2007)은 감사보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피감사기업의 규모, 복잡성이나 영업위험과 같이 감사위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감사인의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피감사기업의 규모가 크고 감사가 복잡할수록 감사보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감사인에게 더 많은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취채권과 재고자산으로 인해 기업가치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복잡성은 더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감사기업의 영업위험이 높아질수록 감사위험이 높아져 감사보수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부채비율이 높거나 직전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나 순손실이 발생된 경우에도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Palmrose(1986)와 Francis and Simon(1987)은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회사, 해외자산규모, Big4와 같은 회계법인의 유형, 감사보수 할인현상 등도 감사보수 결정에 고려할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Bell et al.(2001)은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감사시간당 감사보수가 변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수를 유사한 비율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선행연구(요약)

연구자	주요 내용
권수영·김문철(2001)	-Big6 제휴법인의 감사보수가 국내법인의 감사보수보다 높게 나타남 -감사보수 자율화조치로 감사보수의 평균 값은 증가하였으나 제반 감사보수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감사인간의 과당경쟁으로 감사보수 할인이 이루어져 오히려 감소
이세용 등(2005)	-기업규모와 해외매출액 비중은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양(+)의 관계, 평균자산수익률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권수영 등(2005)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 -Big5 회계법인 감사보수가 더 높아 감사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산규모, 영업장 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 상장여부, 감사인 유형, 비감사서비스 및 부채비율이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침
박상훈 등(2011)	-기업규모가 클수록 감사보수가 더 증가
최관·백원선(1998)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감사보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감사시간은 Big6 제휴법인이 더 많이 투입
우용상·이호영(2007)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보수적인 경우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전연도 재무제표가 보수적이면 당해연도 감사보수는 감소하고, 당해연도 감사보수가 증가하면 당해연도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강화
강내철(2008) 이경태 등(2007) 이명곤 등(2009)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이나 기업실패위험이 높은 경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경향

연구자	주요 내용
곽수근·박종일(2008)	-국내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비상장기업 모두에 대해 감사보수 결정요인 분석결과, 시장과 관계없이 Big4 감사인 여부, 초도감사 여부, 감사인지정 여부, 영문재무제표 작성 여부, 내부회계검토 대상 여부,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전기 보다 주식 및 사채발행액의 증가 여부, 매출액 성장성 등이 감사보수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Big4 감사인에 대한 프리미엄 또한 시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됨
Chan(1999) 이상철 등(2011)	-감사인이 변경되는 첫 해에는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남
이명곤 등(2009)	-비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피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냄
Simunic(1980)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종속기업의 수, 영업의 다양성, 해외자산의 규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등은 감사보수에 유의한 영향 -당기순손실 발생여부 및 감사의견도 감사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대·소규모 감사시장간에 Big8과 non-Big8의 감사보수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Francis(1984)	-호주에서는 Big8 회계법인이 non-Big8 회계법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감사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rancis and Stokes(1986)	-호주의 대기업집단에서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보수의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소기업집단에서는 Big8의 감사보수가 non-Big8보다 높게 나타남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한 감사시장에서는 Big8과 non-Big8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

연구자	주요 내용
Francis and Simon(1987)	-피감사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 Big8의 감사보수가 non-Big8의 감사보수보다 높게 나타나 미국의 감사시장에서도 감사인 별로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Stanley(2011)	-감사보수와 피감사기업의 미래경영성과 간에 음(-)의 관련성이 존재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사업위험이 높을 경우 감사보수를 추가적으로 청구
Choi et al.(2006) Hitash et al.(2007)	-피감사기업의 영업위험이 높아질수록 감사위험이 높아져 감사보수는 높아짐 -부채비율이 높거나 직전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나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보수를 증가시킴
Palmrose(1986) Francis and Simon(1987)	-성장잠재력이 높은 회사, 해외자산규모, Big4와 같은 회계법인 유형, 감사보수 할인현상 등을 감사보수 결정시 고려 요인으로 제시
Bell et al.(2001)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감사시간당 감사보수가 변하지 않음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인 감사보수를 유사한 비율로 청구

제 2 절 IFRS 도입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 국내 선행연구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다.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증가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전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감사업무에 투입할 것이다.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는 감사업무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인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초도감사의 경우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나거나(이상철 등, 2011), 감사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 증가가 유의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명곤 등, 2009).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감사인 변경이나 일부 특성을 지닌 일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 상장회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이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의식이 사전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감사인의 경쟁 정도가 완화됨으로써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석식 등(2009)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명곤 등(2012)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수를 청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감사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시간과 동일하게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자유수임제 이후 감사인 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참고〉 이명곤 등(2012)의 감사보수 모형

$$\begin{aligned}
 AFEE = & \beta_0 + \beta_1 IFRS_{i,t} + \beta_2 SIZE_{i,t-1} + \beta_3 CONFM_{i,t} \\
 & + \beta_4 INVREC_{i,t-1} + \beta_5 ISSUE_{i,t-1} + \beta_6 LIQ_{i,t-1} + \beta_7 LEV_{i,t-1} \\
 & + \beta_8 ROA_{i,t-1} + \beta_9 LOSS_{i,t-1} + \beta_{10} GRW_{i,t-1} + \beta_{11} BIG4_{i,t} \\
 & + \beta_{12} FIRST_{i,t} + \beta_{13} LARGE_{i,t-1} + \beta_{14} FORN_{i,t-1} \\
 & + \beta_{15} MARKET_{i,t} + \Sigma \pi IND_{i,t} + \epsilon_{i,t}
 \end{aligned}
 \tag{14}$$

정영기(2012)는 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시기보다 앞당겨 2009년 및 2010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58개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종전의 K-GAAP하에서의 재무제표상의 수치와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과 조정지수는 모두 감사보수와는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감사시간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감사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감사업무가 증대되고 복잡해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한혜상 등(2010)은 피감사기업 자체의 감사복잡성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에 따른 감사보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피감사기업의 업무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보수 사이에는

14) 변수 설명 - A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IFRS : IFRS 도입연도이면 1, 아니면 0, SIZE : 피감사기업의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CONFM : 연결 자회사 수의 자연로그 값, INVREC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ISSUE :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LIQ : 유동비율, LEV : 부채비율, ROA : 총자산이익률, LOSS : 손실발생 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 : 매출액의 성장률, BIG4 : 감사인이 BIG4 이면 1, 아니면 0, FIRST : 초도감사 기업이면 1, 아니면 0, LARGE : 대주주 지분율, FORN : 외국인 지분율, MARKET :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IND : 한국산업분류기준 중분류 산업코드로 선정한 산업별 더미

평균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피감사기업의 업무복잡성을 조건부 변수로 고려할 경우, 피감사기업의 업무복잡성이 높아질수록 평균적으로는 감사보수가 높아지지만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를 통한 감사원가의 절감을 통해 해당 피감사기업의 감사보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용식·강선아(2012)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계획이 감사인 선임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IFRS 도입 계획 이후에 Big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IFRS 도입 계획 이전과 이후에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IFRS 도입 계획 이후 Big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추세가 감사품질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해외 선행연구

Vieru and Schadewitz(2010)은 핀란드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riffin et al.(2009)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이 뉴질랜드의 감사환경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oncharov et al.(2011)은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부동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수록 감사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ncharov et al.(2011)은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기업과 자본시장 간의 정보 비대칭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부동산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Daske et al.(2008)은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EU의 26개 국가의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이전과 이후에 시장유동성(zero 수익률의 기간비용, 일별 주가변동금액 대비 거래량), 자본비용(총거래비용, bid-ask spread, 자기 자본비용) 및 '토빈의 q'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 시장유동성은 증가하고, 자본비용이 약 4.9% 감소하며, '토빈의 q'로 측정된 기업가치는 3.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자본시장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Barth et al.(2008)은 미국을 제외한 21개국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999~2003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국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의 질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Ball et al.(2003)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1984년부터 1996년까지의 2,726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무보고의 질이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성문법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고품질의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곧바로 재무보고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환경자체가 고품질의 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회계감독 시스템의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 IFRS 도입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요약)

연구자	주요 내용
임석식 등(2009)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IFRS가 도입되면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설문조사)
이명곤 등(2012)	-IFRS의 도입은 피감사기업의 회계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며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피감사기업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 영향 -즉, IFRS의 도입은 피감사기업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감사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감사인이 적발위험을 낮춰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만들 것이므로 감사인은 적발위험의 감소를 위해 감사투입 시간을 증가시킬 것
정영기(2012)	-K-GAAP하에서의 재무제표상의 수치와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과 조정지수는 모두 감사보수와는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시간은 유의적으로 증가
한혜상 등(2010)	-피감사기업 자체의 감사복잡성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에 따른 감사보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김용식·강선아(2012)	-국제회계기준 도입 계획이 감사인 선임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Big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

연구자	주요 내용
Vieru and Schadewitz(2010)	-핀란드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자문용역 수행으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
Griffin et al.(2009)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 개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 증가가 크게 나타남
Goncharov et al.(2011)	-기업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수록 기업과 자본시장 간의 정보비대칭 감소로 감사보수는 감소
Daske et al.(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시장유동성이 증가하고 자본비용은 감소하였으며, 기업가치는 증가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자본시장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Barth et al.(2008)	-미국을 제외한 21개국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999~2003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국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의 질이 증가하였음을 보고
Ball et al.(2003)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1984~1996년 동안의 2,726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무보고의 질이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성문법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을 관찰

제 3 절 IFRS 도입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기업들의 자발적인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통일된 재무정보의 수요에 기인한 것이며, 이와 같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일수록 새로운 재무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효익이 크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준비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효익과 비용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우수한 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비대칭 및 자본조달비용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효익보다 재무보고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다(Hail et al., 2010). 이러한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투명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한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 효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개별 국가의 회계기준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보고이익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th et al., 2008; Ding et al., 2006; Bae et al., 2008; Kinnunen et al., 2001). 따라서 이전보다 회계정보의 공시품질과 양이 증가하므로 경영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것이며,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해지므로 시장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결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투명성에 대한 수요를 가진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해외매출이 많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Ashbaugh, 2001; Cuijpers and Buijink, 2005).

Leuz(2003)와 Hope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얻게 될 가장 중요한 효익으로 자본비용 감소와 이에 따른 기업가치의 증가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이 개별 국가들의 회계처리기준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여 자본비용이 낮아 진다(Healy et al., 1999; Leuz and Verrecchia, 2000; Gassen and Sellhorn, 2006; Christensen et al., 2007; Covrig et al., 2007; Lambert et al., 2007). 또한, 국제회계기준이 개별 국가들의 회계처리기준보다 광범위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점 역시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Francis et al., 2004; Hail and Leuz, 2006). 둘째,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계기준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회계기준의 통합 효익(convergence benefits)이 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즉, 국제회계기준은 다른 국가 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Covrig et al., 2007; Armstrong et al., 2010).

국제회계기준은 보다 많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임의적 회계선택이 제약된다. Hail et al.(2010)은 기업이 재량성을 낮추고 대량의 회계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역선택이 감소하고 시장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로 Leuz and Verrecchia(2000)는 독일의 사례에서 정보비대칭의 대용변수로 bid-ask spread와 주식거래량을 사용하여 국제회계기준으로 보고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GAAP를 적용할 때보다 정보비대칭이 줄어들고 자본비용도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정보비대칭의 감소로 대리인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된 결과,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Healy et al., 1999; Lambert et al., 2007; Biddle et al., 2009).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자본시장의 참여자, 피감사기업 및 감사인 등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Bell et al., 2012).

이우재 등(2011)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소 상장기업 중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비용을 보고한 152개(기업-연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수요가 많은 기업

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해외의 거래처와 투자자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외국 회계정보와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보위험을 줄임으로써 부채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얻는 혜택이 크고 해외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짐을 시사한다.

Jermakowicz and Gornik-Tomaszewski(2006)의 연구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2004년 해당 국가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기업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재무제표 관련 기업 간 단순한 결합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적용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기업들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은 반면 재무정보의 변동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의 가이드라인 미비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복잡성을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핵심과제로 보았다. 그리고 대다수 응답기업들은 만일 유럽연합의 규제기관에 의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Aisbitt(2006)는 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자본(Equity)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별 자본 항목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가지고 오는 변화는 재무 분석 시 또는 계약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Horton and Serafeim(2010)의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재무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가치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순자

산을 기준으로 음의 조정(negative reconciliation adjustment)을 보고한 기업의 경우 추가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에 영업권손상, 이연법인세 등에 기인한 조정의 가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lao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스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비교가능성은 저하되었으며, 목적적합성 면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시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발생 원인으로 장부가치와 시장가치 간의 차이가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이후에 더 커진 점을 언급하고 있다.

Gassen and Sellhorn(2006)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독일 상장기업들이 얻은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크거나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소유지분의 분산이 작으며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Christensen et al.(2007)은 기업의 미래 회계정보를 예측하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고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내부 소유 지분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은행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Ashbaugh(2001)가 미국 이외의 기업중 국제회계기준 또는 US-GAAP을 적용한 기업의 특성을 비교·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에서 주식거래가 많은 기업과 자국회계기준보다 좀 더 표준화된 재무정보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자국회계기준보다 국제회계기준이나 US-GAAP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선호했고 자국회계기준이 회계정책 변경이 많은 경우에 US-GAAP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제적인 재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참고〉 IFRS 도입기업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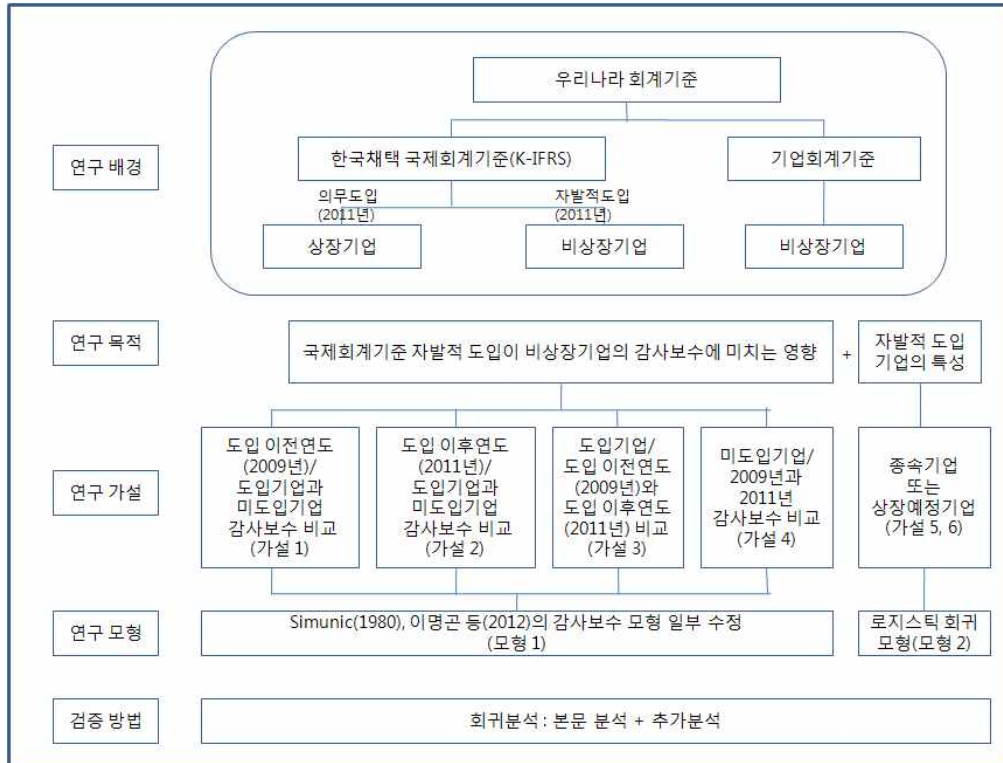
연구자	주요 내용
Hail et al.(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 이미 우수한 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비대칭 및 자본조달비용이 적은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효익보다 재무보고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큼 -국제회계기준은 보다 많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임의적인 회계선택이 제약
Barth et al.(2008) Ding et al.(2006) Bae et al.(2008) Kinnunen et al.(2001)	-국제회계기준은 개별 국가의 회계기준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보고이익의 질 또한 높아짐
Ashbaugh(2001) Cuijpers and Buijink(200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해외매출이 많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향
Leuz(2003) Hope et al.(2005)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얻게 될 가장 중요한 효익은 자본비용 감소와 이에 따른 기업가치의 증가
Healy et al.(1999) Leuz and Verrecchia(2000) Gassen and Sellhorn(2006) Christensen et al.(2007) Covrig et al.(2007) Lambert et al.(2007) Biddle et al.(2009)	-국제회계기준이 개별 국가들의 회계처리 기준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면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여 자본비용이 낮아 짐
Bell et al.(2012)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자본시장의 참여자, 피감사기업, 감사인 등이 인지할 필요
Francis et al.(2004) Hail and Leuz(2006)	-국제회계기준이 개별 국가들의 회계처리 기준보다 광범위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비용 감소에 기여
Covrig et al.(2007) Armstrong et al.(2010)	-국제회계기준은 다른 국가 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킴

연구자	주요 내용
이우재 등 2011	-국내에서 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소 상장기업 중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비용을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채비율과 자금조달의 수요, 시가총액이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
Jermakowicz and Gornik-Tomaszewski(2006)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응답 -대다수 응답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강제되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
Aisbitt(2006)	-영국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Horton and Serafeim(2010)	-영국에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순자산을 기준으로 음의 조정을 보고한 기업의 경우 추가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영업권손상, 이연법인세 등에 기인한 조정의 가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남
Callao et al.(2007)	-스페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비교가능성이 저하
Gassen and Sellhorn(2006)	-기업규모가 크거나,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소유지분의 분산이 작으며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제 4 장 연구 설계

우리나라는 2011년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 사용토록 하면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사용하되 자발적으로 K-IFRS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이전에 비해 또는 미도입기업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imunic(1980) 및 이명곤 등(2012)의 감사보수 결정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검증하였다. 아울러 자발적 도입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이유를 상장기업의 종속기업 때문인지 또는 상장 예정기업 때문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을 선정하여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하였으며, 미도입 비상장기업과도 동일하게 비교하였다.

〈그림 4-1〉 실증 분석의 체계도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1. 감사보수와 관련된 연구가설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주식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범위가 넓어지고 감사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대상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감사인은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감사보수도 더 많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등 감사보수 증가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의무도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데에는 지배·종속기업간 회계기준 일치 또는 상장추진 등 도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회계투명성이 향상되고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쉽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재무제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부담도 완화된다. 또한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해외 증시에 대한 신규 진출도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Hung and Subramanyam(2007)이 독일의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기업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ROA가 높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규모가 크고, 유상증자가 증가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Ashbaugh(2001), Cuijpers and Buijink(2005)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해외매출이 많은 기업 또는 규모가 큰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Gassen and Sellhorn(2006)은 외국에 상장되어 있고 소유지분의 분산이 작으며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중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비용보다 높다고 인식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이우재 등, 2011).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재무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이미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중시함으로써 Big4와 같은 대형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연도에도 이미 미도입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감사보수를 지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연도의 감사보수는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보다 클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증가하여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전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개별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는 감사업무의 원가를 증가시켜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곤 등(2012)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도입된 이후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감사보수를 청구하는 지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고 감사보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Vieru and Schadewitz(2010)은 핀란드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며, 미도입기업에 비해서도 감사보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다

음과 같이 가설 2,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2 :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후연도의 감사보수는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보다 클 것이다**

**가설 3 :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후연도의 감사보수는
도입 이전연도의 감사보수보다 클 것이다**

1999년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국내 감사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액의 비중과 같은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감사인의 평판 등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 자율화 조치 이후 감사보수의 평균값은 증가하였으나 제반 감사보수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에 감사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인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감사보수의 할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Chan(1999)과 이상철 등(2011)은 감사인이 변경되는 첫 해에는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명곤 등(2009)은 감사인 간의 경쟁심화로 비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피감사기업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감사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감사인 간의 경쟁 등으로 감사보수 할인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감사 투입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4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가설 4가 지지된다면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를 더욱 강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4 : K-IFRS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는 K-IFRS 시행 전·후
시기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감사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비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공시체계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종전의 사업연도 120일 이내에서 주총 1주 전으로 단축되어 공시된다. 지배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종속기업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비상장 종속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중복작성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K-GAAP에서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으나 K-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분율이 30%~50%이면서 실질지배력¹⁵⁾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작성 대상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지분율 30%~50%미만의 종속기업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작성 편의상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K-IFRS의 자발적 도입 가능성이 높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¹⁶⁾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5를 설정한다.

가설 5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이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의

15)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거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

1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 의무(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를 부담하게 됨 : '13.11.1일 현재 62개 기업집단 1,765개 회사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6을 설정한다.

가설 6 : 비상장기업이 상장 예정기업이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 2 절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09년 및 2011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한 비상장 외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최종표본을 선정하였다

- 1)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 2)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제외
- 3) 2009년 및 2010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 제외
- 4) 감사보수 및 감사인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 5)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 6) 동등비교를 위하여 2009년(독립변수중 2008년)과 2011년(독립변수중 2010년) 자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제외(가설1,2,3,4를 검증하기 위하여 샘플 수를 맞추고 동일 기업간 비교를 수행)
- 7) 마지막으로 이상치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외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전체의 상위 1% 및 하위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값을 원저화(winsorization)기법으로 처리하였다.

〈표 4-1〉 표본 선정 현황

구분		2009년 기업	2011년 기업	합계	K-IFRS 도입기업
전체 표본		16,954	18,759	35,713	1,036
제 외 기 업	1)금융업 및 보험업	596	780	1,376	57
	2)결산일 변경 및 12월 결산 법인이 아닌 기업	625	684	1,309	3
	3)2009년, 2010년 K-IFRS 도입기업	29	91	120	0
	4)감사보수 및 감사인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3,818	1,403	5,221	0
	5)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03	280	383	43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 표본은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도매및 소매업의 비중이 높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준으로는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순으로 높았다. 이는 이명곤 등(2012)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비상장기업의 경우 건설업의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표본의 산업별 분포

(단위 : 개, %)

	대분류	합계		IFRS 도입기업	
			구성비		구성비
A	농업, 임업 및 어업	84	0.37	10	1.40
B	광업	84	0.37	2	0.28
C	제조업	10,408	46.29	348	48.81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8	0.92	24	3.37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50	1.11	8	1.12
F	건설업	2,684	11.93	29	4.07
G	도매 및 소매업	2,412	10.72	73	10.24
H	운수업	1,030	4.58	17	2.38
I	숙박 및 음식점업	394	1.75	14	1.96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10	4.05	75	10.5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92	11.08	37	5.19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4	2.15	25	3.5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70	1.20	17	2.3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	0.01	0	0.00
P	교육 서비스업	66	0.29	4	0.5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0.03	0	0.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6	2.69	26	3.6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4	0.46	4	0.56

제 3 절 연구모형의 설정

앞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사보수는 크게 감사위험과 감사품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피감사기업의 영업내용이 복잡할수록 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노력의 투입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영업의 복잡성은 종속기업의 수, 피감사기업이 영업을 영위하는 산업의 수, 총자산(매출)에 대한 해외자산(매출)의 비율, 감사대상보고서의 수, 피감사기업의 상장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이 감사과정을 감사절차규정대로 적용하여도 밝혀내기 어려운 오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감사 이후에 회계정보이용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이에 따르는 감사인의 평판 하락과 같은 위험도 감사위험에 포함된다. 이러한 감사위험은 당좌비율, 유동자산 비율, 총자산에 대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과거의 당기순손실 발생여부, 총자산이익률, 부채비율, 과거의 감사의견, 피감사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상에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감사보수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Francis(1984), Palmrose(1986), Francis와 Stokes(1986), Francis와 Simon(1987) 등은 감사품질의 우위로 인하여 대형회계법인이 나머지 회계법인보다 높은 감사보수를 받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즉 Big4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높은 것은 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① 피감사기업의 규모 : 피감사기업의 규모는 총매출액 또는 총자산으로 표시되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피감사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보수는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피감사기업의 총자산으로 피감회사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 ② 피감사기업의 영업의 복잡성 :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을수록, 사업지역이 넓을수록(특히 해외영업) 감사보수는 커진다.
- ③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비율 :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감사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커진다

- ④ 상장 여부 : 피감사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감사위험이 증대된다. 따라서 상장되어 있는 경우 비상장보다 감사보수가 더 높다. 다만,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장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⑤ 감사인의 규모 : 규모가 큰 감사인의 경우 규모에 대한 경제로 인하여 감사의 효율성이 증대되나 Big4의 경우 감사품질이 높아 더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형회계법인이 차별화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⑥ 산업별 차이 : 미국의 경우 감사보수가 산업별로 차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산업별로 요구되는 감사작업 및 감사위험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산업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표 4-3〉 감사보수에 미치는 요인¹⁷⁾

주요 요인		회귀계수
국제회계기준 도입		+
피감사기업의 규모	총자산	+
감사위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총자산이익률	-
	자산성장률	+
	비적정의견	+
감사인의 특성	Big4	+
	초도감사	-

17) 선행연구에서는 피감회사의 규모에 종업원수, 감사의 복잡성에 연결대상 종속기업수, 수출 규모 등을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자료입수가 곤란하여 이들 항목은 고려하지 않음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신규 상장기업이 예정된 기업일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울러, 김용식·강선아(2012)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계획이 Big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감사인 변경 여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였다.

〈표 4-4〉 비상장기업의 K-IFRS 도입 가능성

주요 요인	회귀계수
종속기업	+
신규상장기업	+
총자산	+
부채비율	-
총자산이익률	+
자산성장률	+
감사인 변경	+

1. <가설 1>, <가설 2>, <가설 3> 및 <가설 4>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imunic(1980), 이명곤 등(2012), 정영기(2012)의 모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가설 1, 가설 2, 가설 3, 및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식(1)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9년 감사보수 계약을 보고한 기업중 2011년에 IFRS를 도입한 기업이면 $KIFRS_{i,t}$ 를 1로 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한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1년 감사보수 계약을 보고한 기업중 2011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이면 $KIFRS_{i,t}$ 를 1로 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한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1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과 2011년 감사보수를 비교하였으며 해당 연도가 2011년이면 $KIFRS_{i,t}$ 를 1로 하고, 2009년이면 0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과 2011년 감사보수를 비교하였으며 해당 연도가 2011년이면 $KIFRS_{i,t}$ 를 1로 하고, 2009년이면 0으로 하였다.

감사보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감사위험 및 성장성이 높을수록, 대형회계법인일수록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INVREC_{i,t-1}$), 유동비율($LIQUID_{i,t-1}$), 부채비율($LEV_{i,t-1}$), 영업이익률($ROA_{i,t-1}$)이 감사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¹⁸⁾

$$LNFE_{i,t} = \beta_0 + \beta_1 KIFRS_{i,t} + \beta_2 LNSIZE_{i,t-1} + \beta_3 INVREC_{i,t-1} + \beta_4 LIQUID_{i,t-1} + \beta_5 LEV_{i,t-1} + \beta_6 ROA_{i,t-1} + \beta_7 GRW_{i,t} + \beta_8 BIG_{i,t} + \beta_9 FIRST_{i,t} + \beta_{10} OPINION_{i,t} + \Sigma IND_{i,t} + \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1)}$$

$LNFE_{i,t}$: 피감사기업 i의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KIFRS_{i,t}$: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피감사기업 i가

18)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와 설명변수인 총자산에 로그를 취한 이유는 회귀분석에서 이분산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2011년 K-IFRS 도입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였으며,
 <가설 3>과 <가설 4>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i 가 2011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NSIZE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자산총액에 자연로그 값

$INVREC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총자산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매출채권+재고자산)/총자산)

$LIQUID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LEV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총부채/총자산)

$ROA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당기순이익/총자산)

$GRW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 총자산 성장률
 (t 년도말 자산 - $t-1$ 년도말 자산) / $t-1$ 년도말 자산)

$BIG4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에 감사인이 Big4(삼일, 안진, 삼정, 한영)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FIRST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에 감사인이 초도감사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OPINION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gma IND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 대분류기준 해당산업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epsilon_{i,t}$: 잔차항

$LNSIZE_{i,t-1}$ 는 피감사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피감사기업의 총자
 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영업내용이 복잡해지
 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감
 사보수는 증가(이세용·송혁준, 2005)할 것이다. 는 총자산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많은 경우

감사인의 감사범위가 커지고 피감사기업에 내재하는 감사위험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최관·백원선, 1998)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감사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유동비율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은 커지므로 유동비율($LIQUID_{i,t-1}$)과 부채비율($LEV_{i,t-1}$)을 감사위험 측정변수로 반영하였다. 또한, 자산수익률이 낮을 경우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므로(노준화 등, 2004) $ROA_{i,t-1}$ 를 감사위험에 대한 측정치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총자산 성장률($GRW_{i,t}$)을 추가하였다. $OPINION_{i,t}$ 은 감사의견으로서 비적정의견이면 1, 적정의견이면 0의 값을 갖는다. 최관·백원선(1998)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되는 피감사기업일수록 감사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 $INVREC_{i,t-1}$, $ROA_{i,t-1}$ 그리고 $OPINION_{i,t}$ 으로부터 감사대상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감사위험이 클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BIG4_{i,t}$ 는 감사품질에 대한 측정치로서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대형회계법인일수록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Francis, 1984; Palmrose, 1986; Francis와 Stokes, 1986; Francis와 Simon, 198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Big4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권수영·김문철,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형회계법인일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서 그에 상응하는 높은 감사보수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Big4를 통하여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FIRST_{i,t}$ 는 감사인 유지제도에 따라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할인된다는 조준화 등(2004)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Sigma IND_{i,t}$ 는 산업별 더미변수로서 해당 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 산업별로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다(권수영·김문철, 2001)는 증거가 있으므로 산업별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Sigma IND_{i,t}$ 를 포함하였다.

2. <가설 5>와 <가설 6>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높은 감사보수와 재무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야하는 등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¹⁹⁾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우재 등, 2011).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배회사가 상장기업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편의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식2)를 사용하였다. 즉, 표본기업이 종속기업이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식1에서 사용한 기타 변수도 포함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ROA가 높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고(Hung and Subramanyam, 2007)하고 있어, $LNSIZE_{i,t-1}$, $LEV_{i,t-1}$, $ROA_{i,t-1}$, $GRW_{i,t}$ 를 포함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보다 전문가적인 판단을 요구하므로 Big4에 의한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non-Big4에서 Big4로 변경 선임하였으면 1을, Big4에서 non-Big4로 변경 선임하였으면 -1을,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0으로 하였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하여 $IPO_{i,t+2}$ 를 추가하여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2년 이내(2013년 11월까지)에 상장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KIFRS_{i,t} = \beta_0 + \beta_1 CONFS_{i,t} + \beta_2 IPO_{i,t+2} + \beta_3 LNSIZE_{i,t-1} + \beta_4 LEV_{i,t-1} + \beta_5 ROA_{i,t-1} + \beta_6 GRW_{i,t} + \beta_7 \Delta BIG4_{i,t} + \Sigma IND_{i,t} + \epsilon_{i,t} \dots \text{식 (2)}$$

$t = 2011$

$KIFRS_{i,t}$: 피감사기업 i가 t년도에 K-IFRS를 도입하였으면 1, 아니면 0

$CONFS_{i,t}$: 피감사기업 i가 종속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면 1, 아니면 0

19) 2010년 1월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현황 조사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기업들은 시스템 정비, 운영 및 관리와 외부감사 등에 일반기업의 경우 2.8억원, 금융회사는 2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IPO_{i,t+2}$: 피감사기업 i 가 2년 이내에 상장하였으면 1, 아니면 0
- $LNSIZE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자산총액에 자연로그 값
- $LEV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총부채/총자산)
- $ROA_{i,t-1}$: 피감사기업 i 의 $t-1$ 년도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당기순이익/총자산)
- $GRW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 총자산 성장률
(t 년도말 자산 - $t-1$ 년도말 자산) / $t-1$ 년도말 자산)
- $\Delta BIG4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 감사인이 Big4로 변경되었으면 1, 변경되지 않았으면 0, non-Big4로 변경되었으면 -1
- $\Sigma IND_{i,t}$: 피감사기업 i 의 t 년도 대분류기준 해당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
- $\epsilon_{i,t}$: 잔차항

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및 단변량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5-1> 패널 A부터 패널 E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패널 A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LNFEES_{i,t}$ 는 원래의 감사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평균(표준편차)과 중위수는 각각 16.706(0.588)과 16.649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최소값(15.425)과 중위수(16.649)의 차이(1.224)와 최대값(18.407)과 중위수(16.649)의 차이(1.758)도 크지 않아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KIFRS_{i,t}$)의 평균은 0.032로 나타나 있으나 <표 5-1>이 연구대상 표본 전체의 기술통계분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표 4-1> 표본선정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 11,247개 기업중 713개 기업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6.3%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해당된다. $LNSIZE_{i,t-1}$ 는 기말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평균(표준편차)이 24.181(0.925)이고 중위수는 23.941로 평균이 중위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소값(23.026)과 중위수의 차이(0.915)가 크지 않은 반면 최대값(27.401)과 중위수의 차이(3.46)가 큰 것으로 나타나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이루고 있다. $INVREC_{i,t-1}$ 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표준편차)은 0.294(0.254)이고 중위수는 0.250으로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최소값은 0임에 비하여 중위수와 최대값이 각각 0.250과 0.953인 것으로 보아 $INVREC_{i,t-1}$ 은 중위수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IOUID_{i,t-1}$ 은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평균(표준편차)은 2.712(7.768)이고 중위수는 1.061이다. 이 때, 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0.014와 64.713으로서 중위

수가 1.061임을 고려해 볼 때 일부 기업들이 큰 값의 $LIOUID_{i,t-1}$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V_{i,t-1}$ 는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평균(표준편차)이 0.668(0.328)이고 중위수는 0.664로 최소값(0.029)과 중위수의 차이(0.635)가 크지 않은 반면 최대값(1.763)과 중위수의 차이(1.099)가 큰 것으로 보아 일부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ROA_{i,t-1}$ 는 피감사기업의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로서 평균(표준편차)은 0.014(0.111)이고 중위수는 0.019이다. 따라서 표본의 50% 이상의 기업이 양(+)의 이익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RW_{i,t}$ 는 피감사기업의 총자산성장률로서 평균(표준편차)은 0.078(0.263)이고 중위수는 0.041로서 표본의 50% 이상의 기업이 양(+)의 성장률을 보고하고 있다. $BIG4_{i,t}$ 는 감사인이 Big4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데 평균(표준편차)은 0.224(0.417)이므로 이는 표준 중 약 22.4%가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RST_{i,t}$ 는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가 초도감사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데 평균(표준편차)이 0.159(0.365)이므로 표본의 약 16%가 초도감사임을 알 수 있다. $OPINION_{i,t}$ 은 감사의견으로서 비적정의견이면 1, 적정의견이면 0의 값을 갖는데 평균(표준편차)은 0.062(0.240)이므로 표본 중 약 6.2%가 비적정의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널 F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종속기업($CONFS_{i,t}$) 평균이 19.6%로 나타났으며, 상장예정기업($IPO_{i,t+2}$) 평균은 0.1%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여부($KIFRS_{i,t}$), 자산규모($LNSIZE_{i,t-1}$), 부채비율($LEV_{i,t-1}$), 총자산이익률($ROA_{i,t-1}$), 자산성장률($GRW_{i,t}$) 등의 평균값은 가설 2의 결과와 동일하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2년 이내에 주권을 상장한 $IPO_{i,t+2}$ 는 0.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표본 11,247개 중 9개사가 상장한 데 따른 것이다.²⁰⁾

20) 본 연구 표본중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713개사 가운데 5개사가 2013.11월 현재 신규 상장하여 그 비중이 0.7%로 전체의 0.1%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표 5-1〉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패널 A. 2009년 및 2011년 전체 표본						
$LNFEF_{i,t}$	22,494	16.706	0.588	15.425	16.649	18.407
$KIFRS_{i,t}$	22,494	0.032	0.175	0.000	0.000	1.000
$LNSIZE_{i,t-1}$	22,494	24.181	0.925	23.026	23.941	27.401
$INVREC_{i,t-1}$	22,494	0.294	0.254	0.000	0.250	0.953
$LIOUID_{i,t-1}$	22,494	2.712	7.768	0.014	1.061	64.713
$LEV_{i,t-1}$	22,494	0.668	0.328	0.029	0.664	1.763
$ROA_{i,t-1}$	22,494	0.014	0.111	-0.483	0.019	0.313
$GRW_{i,t}$	22,494	0.078	0.263	-0.614	0.041	1.210
$BIG4_{i,t}$	22,494	0.224	0.417	0.000	0.000	1.000
$FIRST_{i,t}$	22,494	0.159	0.365	0.000	0.000	1.000
$OPINION_{i,t}$	22,494	0.062	0.240	0.000	0.000	1.000
패널 B. 2009년 표본(가설1)						
$LNFEF_{i,t}$	11,247	16.697	0.575	15.425	16.649	18.407
$KIFRS_{i,t}$	11,247	0.063	0.244	0.000	0.000	1.000
$LNSIZE_{i,t-1}$	11,247	24.116	0.916	23.026	23.868	27.401
$INVREC_{i,t-1}$	11,247	0.295	0.256	0.000	0.248	0.953
$LIOUID_{i,t-1}$	11,247	2.880	8.307	0.014	1.063	64.713
$LEV_{i,t-1}$	11,247	0.670	0.310	0.029	0.674	1.763
$ROA_{i,t-1}$	11,247	0.010	0.111	-0.483	0.015	0.313
$GRW_{i,t}$	11,247	0.102	0.270	-0.614	0.049	1.210
$BIG4_{i,t}$	11,247	0.225	0.418	0.000	0.000	1.000
$FIRST_{i,t}$	11,247	0.191	0.393	0.000	0.000	1.000
$OPINION_{i,t}$	11,247	0.053	0.225	0.000	0.000	1.000

1) 표본수 : 2011년에 IFRS를 도입한 기업 713개와 미도입기업 10,534개를 대상으로 2009년 및 2011년의 실적을 분석

〈표 5-1〉 기술통계 (계속)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패널 C. 2011년 표본(가설2)						
$LNFE E_{i,t}$	11,247	16.716	0.599	15.425	16.706	18.407
$KIFRS_{i,t}$	11,247	0.063	0.244	0.000	0.000	1.000
$LNSIZE_{i,t-1}$	11,247	24.245	0.930	23.026	24.018	27.401
$INVREC'_{i,t-1}$	11,247	0.292	0.251	0.000	0.252	0.953
$LIOUID_{i,t-1}$	11,247	2.544	7.186	0.014	1.057	64.713
$LEV_{i,t-1}$	11,247	0.667	0.345	0.029	0.654	1.763
$ROA_{i,t-1}$	11,247	0.017	0.111	-0.483	0.023	0.313
$GRW_{i,t}$	11,247	0.055	0.253	-0.614	0.033	1.210
$BIG4_{i,t}$	11,247	0.223	0.416	0.000	0.000	1.000
$FIRST_{i,t}$	11,247	0.126	0.332	0.000	0.000	1.000
$OPINION_{i,t}$	11,247	0.070	0.255	0.000	0.000	1.000
패널 D. 국제 회계기준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2009년, 2011년)(가설3)						
$LNFE E_{i,t}$	1,426	17.147	0.638	15.425	17.148	18.407
$KIFRS_{i,t}$	1,426	0.500	0.500	0.000	0.500	1.000
$LNSIZE_{i,t-1}$	1,426	24.795	1.100	23.026	24.669	27.401
$INVREC'_{i,t-1}$	1,426	0.279	0.220	0.000	0.263	0.953
$LIOUID_{i,t-1}$	1,426	2.876	8.259	0.014	1.175	64.713
$LEV_{i,t-1}$	1,426	0.559	0.301	0.029	0.557	1.763
$ROA_{i,t-1}$	1,426	0.023	0.118	-0.483	0.028	0.313
$GRW_{i,t}$	1,426	0.140	0.297	-0.614	0.084	1.210
$BIG4_{i,t}$	1,426	0.662	0.473	0.000	1.000	1.000
$FIRST_{i,t}$	1,426	0.198	0.399	0.000	0.000	1.000
$OPINION_{i,t}$	1,426	0.013	0.115	0.000	0.000	1.000

〈표 5-1〉 기술통계 (계속)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패널 E. 국제회계기준 미도입 비상장기업(2009년, 2011년)(가설4)						
$LNFE E_{i,t}$	21,068	16.677	0.572	15.425	16.649	18.407
$KIFRS_{i,t}$	21,068	0.500	0.500	0.000	0.500	1.000
$LNSIZE_{i,t-1}$	21,068	24.139	0.897	23.026	23.911	27.401
$INVREC_{i,t-1}$	21,068	0.295	0.256	0.000	0.249	0.953
$LIOUID_{i,t-1}$	21,068	2.701	7.734	0.014	1.054	64.713
$LEV_{i,t-1}$	21,068	0.676	0.328	0.029	0.671	1.763
$ROA_{i,t-1}$	21,068	0.013	0.111	-0.483	0.019	0.313
$GRW_{i,t}$	21,068	0.074	0.260	-0.614	0.038	1.210
$BIG4_{i,t}$	21,068	0.194	0.396	0.000	0.000	1.000
$FIRST_{i,t}$	21,068	0.156	0.363	0.000	0.000	1.000
$OPINION_{i,t}$	21,068	0.065	0.246	0.000	0.000	1.000
패널 F. 종속기업 및 상장예정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2011년)(가설5, 가설6)						
$KIFRS_{i,t}$	11,247	0.063	0.244	0.000	0.000	1.000
$CONFS_{i,t}$	11,247	0.196	0.397	0.000	0.000	1.000
$IPO_{i,t+2}^{1)}$	11,247	0.001	0.028	0.000	0.000	1.000
$LNSIZE_{i,t-1}$	11,247	24.245	0.930	23.026	24.018	27.401
$LEV_{i,t-1}$	11,247	0.667	0.345	0.029	0.654	1.763
$ROA_{i,t-1}$	11,247	0.017	0.111	-0.483	0.023	0.313
$GRW_{i,t}$	11,247	0.055	0.253	-0.614	0.033	1.210

주1) 표본중에서 2013년까지 신규상장기업 9개, 그중 5개 기업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

한편, 감사보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5-2>에서 감사보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 A에서 2011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과 미도입한 기업의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 평균을 보면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2009년이나 2011년 모두 감사보수가 더 높으며, 도입기업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17.068 → 17.226)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도입기업의 경우 소폭 증가(16.671 → 16.682)한²¹⁾ 것으로 나타난다.

패널 B에서는 감사인 규모에 따른 감사보수를 비교하였는데 도입기업의 경우 Big4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기업이 444개로 non-Big4에 의한 감사기업 269개에 비해 65%가 더 많은 반면, 미도입기업은 Big4에 의한 감사(2,086개)보다 non-Big4에 의한 감사기업(8,448)이 월등히 더 많으며, 감사보수 측면에서도 도입기업의 Big4에 의한 감사보수(17.242)가 미도입기업의 Big4에 의한 감사보수(17.0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입기업의 경우 K-GAAP을 적용하던 2009년에 비해 K-IFRS를 적용한 2011년에 Big4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2009년 444개 → 2011년 500개) 반면, 미도입기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2009년 2,086개 → 2011년 2,003개)한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C에는 초도감사 여부에 따른 감사보수를 비교하였는데 도입기업의 경우 2009년과 2011년중 초도감사 기업과 계속감사 기업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으나, 미도입기업의 경우 2011년중 초도감사 기업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계속감사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감사위험의 증가 등에 따라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Big4 감사인 등 새로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수 측면에서는 초도감사 기업의 감사보수가 계속감사 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낮은 것은 초도감사의 경우 감사보수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도입기업의 경우 2009년의 초도감사 보수 18.813에 비해 2011년의 초도감사 보수가 17.13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K-GAAP에 비해 K-IFRS에 의한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D에는 감사의견에 따른 감사보수를 비교하였는데 적정의견이 비적정

21) 자연로그값이 아닌 원 자료에 의한 평균은 도입기업이 2009년 31.0백만원, 2011년 36.9백만원, 미도입기업이 2009년 20.7백만원, 2011년 21.0백만원임

의견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기업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비적정의견이 배 이상 증가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초기에 기업들의 회계기준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입기업의 경우 비적정의견의 감사보수가 적정의견의 감사보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패널 E에서는 업종별 감사보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제조업 및 도소매업은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감사보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이 많았으나 기타 업종은 많지 않았던데 기인한다.

〈표 5-2〉 감사보수에 대한 기술통계

패널 A :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도입기업	2009년	713	17.068	0.609	17.034
	2011년	713	17.226	0.657	17.249
미도입기업	2009년	10534	16.671	0.564	16.636
	2011년	10534	16.682	0.579	16.649

패널 B : 감사인 규모에 따른 비교
(2009년)

구분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도입기업	Big4	444	17.242	17.217	0.595
	non-Big4	269	16.780	16.811	0.515
미도입기업	Big4	2086	17.081	17.034	0.594
	non-Big4	8448	16.570	16.524	0.508

(2011년)

구분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도입기업	Big4	500	17.381	17.399	0.621
	non-Big4	213	16.862	16.951	0.591
미도입기업	Big4	2003	17.111	17.074	0.605
	non-Big4	8531	16.581	16.524	0.524

패널 C : 초도감사 여부에 따른 비교

(2009년)

구분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도입기업	초도감사	141	16.813	16.811	0.617
	계속감사	572	17.131	17.111	0.590
미도입기업	초도감사	2008	16.502	16.524	0.552
	계속감사	8526	16.711	16.655	0.560

(2011년)

구분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도입기업	초도감사	142	17.137	17.148	0.677
	계속감사	571	17.248	17.249	0.650
미도입기업	초도감사	1280	16.545	16.524	0.586
	계속감사	9254	16.700	16.678	0.576

패널 D : 감사의견에 따른 비교

(2009년)

구분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도입기업	적정의견	707	17.069	17.034	0.609
	비적정	6	16.958	17.062	0.587
미도입기업	적정의견	9941	16.682	16.649	0.564
	비적정	593	16.500	16.524	0.536

(2011년)

구분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도입기업	적정의견	700	17.219	17.217	0.655
	비적정	13	17.619	17.823	0.640
미도입기업	적정의견	9760	16.700	16.651	0.575
	비적정	774	16.453	16.455	0.583

패널 E : 업종에 따른 비교

	제조업 (5,204개)	건설업 (1,342개)	도소매업 (1,206개)	서비스및기타 (3,495개)
--	-----------------	-----------------	------------------	--------------------

2. 단변량 분석

연구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한 단변량분석결과를 각각 <표 5-3>, <표 5-4>에 제시하였다. <표 5-3>을 보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도입이전 연도에 미도입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 감사보수($LNFE_{i,t}$)의 평균이 17.068로 미도입기업 16.671보다 1% 유의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기업의 자산규모($LNSIZE_{i,t-1}$) 평균이 24.700으로 미도입기업의 자산총액 평균 24.077보다 1% 유의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LEV_{i,t-1}$)은 도입기업의 평균이 0.570으로 미도입기업 평균 0.676보다 1% 유의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비율($LEV_{i,t-1}$), 성장성($GRW_{i,t}$), 회계법인($BIG4_{i,t}$) 및 감사의견($OPINION_{i,t}$)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도입이전 연도에 미도입 기업보다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를 지지한다. 다만, $ROA_{i,t-1}$ 는 도입기업이 0.015로 미도입기업의 0.010에 비해 높으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는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은 낮으며 성장성은 높고 대형회계법인이 감사를 주로하고 있으며, 비적정 감사의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비상장기업에서도 나타났다. <표 5-4>은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단변량분석결과이다. 도입이전 연도에 미도입기업 간 비교분석한 결과(<표 5-3>)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입이후에도 도입기업의 자산규모가 1%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간 비교에서 초도감사여부($FIRST_{i,t}$)에서 1% 유의수준에서 도입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회계법인($BIG4_{i,t}$)의 도입이전 평균은 0.623이었으나 도입이후 평균은 0.7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대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3〉 단변량분석(가설 1-2009년 기준)

변수명	미도입기업 (N=10,534)		도입기업 (N=713)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LNFE_{i,t}$	16.671	0.564	17.068	0.609	16.916***
$LNSIZE_{i,t-1}$	24.077	0.889	24.700	1.096	14.856***
$INVREC_{i,t-1}$	0.297	0.258	0.275	0.220	-2.529**
$LIOUID_{i,t-1}$	2.874	8.282	2.969	8.680	0.295
$LEV_{i,t-1}$	0.676	0.309	0.570	0.301	-8.894***
$ROA_{i,t-1}$	0.010	0.110	0.015	0.117	1.105
$GRW_{i,t}$	0.100	0.269	0.130	0.290	2.675***
$BIG4_{i,t}$	0.198	0.399	0.623	0.485	22.863***
$FIRST_{i,t}$	0.191	0.393	0.198	0.399	0.469
$OPINION_{i,t}$	0.056	0.230	0.008	0.091	-11.694***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표 5-4〉 단변량분석(가설 2-2011년기준)

변수명	미도입기업 (N=10,534)		도입기업 (N=713)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LNFE E_{i,t}$	16.682	0.579	17.226	0.657	21.581***
$LNSIZE_{i,t-1}$	24.201	0.901	24.890	1.097	16.403***
$INVREC_{i,t-1}$	0.293	0.253	0.282	0.220	-1.218
$LIOUID_{i,t-1}$	2.528	7.141	2.783	7.819	0.918
$LEV_{i,t-1}$	0.675	0.346	0.547	0.300	-10.896***
$ROA_{i,t-1}$	0.017	0.111	0.030	0.118	3.028***
$GRW_{i,t}$	0.048	0.248	0.150	0.305	8.763***
$BIG4_{i,t}$	0.190	0.392	0.701	0.458	29.083***
$FIRST_{i,t}$	0.122	0.327	0.199	0.400	5.074***
$OPINION_{i,t}$	0.073	0.261	0.018	0.134	-9.827***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결과를 <표 5-5>에 제시하였다.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도입전후를 분석한 결과에서 감사보수($LNFEET_{i,t}$)의 도입이전 평균은 17.068이고 도입이후의 평균은 17.226으로 1% 유의수준(t -값 4.710)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규모($LNSIZE_{i,t-1}$)는 도입전 평균 24.700에서 도입후 24.890으로 1%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에 감사범위의 확대 및 감사위험의 증가로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 가설 3을 지지한다. 이는 <표 5-6>에서 미도입기업의 2009년 자산규모 평균이 24.077에서 2011년 24.201로 1%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감사보수는 16.671에서 16.682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한편, <표 5-5>에서 Big4 감사인 평균이 0.623에서 0.701로 1%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대형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변경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초도감사($FIRST_{i,t}$)는 0.198에서 0.199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결과를 <표 5-6>에 제시하였다. 미도입 기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감사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도입기업의 $ROA_{i,t-1}$ 는 0.010에서 0.01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자산성장률($GRW_{i,t}$)은 0.100에서 0.048로 1% 유의수준에서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Big4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비율이 19.8%에서 19.0%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초도감사는 19.1%에서 12.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외감대상법인에서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은 자산규모는 크고 부채비율은 낮으며, 자산수익률은 높았으며, K-IFRS를 도입하면서 감사인을 대형회계법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측된다.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감사보수는 증가한 반면 미도입기업의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경제상황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감사보수의 증가는 없었던 반면 K-IFRS도입으로 감사위험이 높아짐으로써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 2, 3을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보아야 명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단변량분석(가설 3-도입기업)

변수명	도입전 2009년(N=713)		도입후 2011년(N=713)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LNFE E_{i,t}$	17.068	0.609	17.226	0.657	4.710***
$LNSIZE_{i,t-1}$	24.700	1.096	24.890	1.097	3.275***
$INVREC_{i,t-1}$	0.275	0.220	0.282	0.220	0.651
$LIOUID_{i,t-1}$	2.969	8.680	2.783	7.819	-0.425
$LEV_{i,t-1}$	0.570	0.301	0.547	0.300	-1.434
$ROA_{i,t-1}$	0.015	0.117	0.030	0.118	2.494**
$GRW_{i,t}$	0.130	0.290	0.150	0.305	1.293
$BIG4_{i,t}$	0.623	0.485	0.701	0.458	3.144***
$FIRST_{i,t}$	0.198	0.399	0.199	0.400	0.066
$OPINION_{i,t}$	0.008	0.091	0.018	0.134	1.617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표 5-6〉 단변량분석(가설 4-미도입기업)

변수명	2009년(N=10,534)		2011년(N=10,534)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LNFE E_{i,t}$	16.671	0.564	16.682	0.579	1.279
$LNSIZE_{i,t-1}$	24.077	0.889	24.201	0.901	10.106***
$INVREC_{i,t-1}$	0.297	0.258	0.293	0.253	-1.067
$LIOUID_{i,t-1}$	2.874	8.282	2.528	7.141	-3.248***
$LEV_{i,t-1}$	0.676	0.309	0.675	0.346	-0.249
$ROA_{i,t-1}$	0.010	0.110	0.017	0.111	4.220***
$GRW_{i,t}$	0.100	0.269	0.048	0.248	-14.580***
$BIG4_{i,t}$	0.198	0.399	0.190	0.392	-1.446
$FIRST_{i,t}$	0.191	0.393	0.122	0.327	-13.883***
$OPINION_{i,t}$	0.056	0.230	0.073	0.261	5.065***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3. 상관관계 분석

종속변수는 $LNFE_{i,t}$ 이고 주된 관심변수는 $KIFRS_{i,t}$ 이다. <표 5-7>는 Pearson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패널B부터 패널D의 가설 1, 2, 3에서는 두 변수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수가 나타난 반면 패널E의 가설 4의 미도입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도입 이전보다 높으며,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 1, 2, 3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미도입기업의 경우 도입 이전 연도와 도입 이후 연도의 감사보수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4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패널A를 중심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감사보수($LNFE_{i,t}$)와 기업규모($LN SIZE_{i,t-1}$)의 상관관계수는 0.594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규모변수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통제변수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피감사기업의 기업규모는 감사보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위험의 대응변수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INVREC_{i,t-1}$)은 양(+)의 부호로 나타나 예측과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부채비율($LEV_{i,t-1}$)은 기대부호와 일치하지 않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이익률($ROA_{i,t-1}$)과 성장률($GRW_{i,t}$)은 기대부호와 일치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감사인 관련 변수에서 감사인이 Big4($BIG4_{i,t}$) 회계법인인 경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초도 감사여부($FIRST_{i,t}$) 및 감사의견($OPINION_{i,t}$)은 예측부호와 동일하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BIG4 회계법인과 제휴된 유명 감사인일수록 감사보수는 높은 반면 초도감사 및 비적정의견인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낮은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치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부채비율()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도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보아야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패널B, C, D, E에서도 패널A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성장률($GRW_{i,t}$)은 패널B와 패널D의 가설 1, 가설 3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패널C와 패널E의 가설 2, 가설 4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패널F에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종속기업($CONFS_{i,t}$)과 신규상장기업($IPO_{i,t+2}$)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일수록, 신규상장 예정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5와 가설 6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5이하 이고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상관관계 분석

패널 A.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전체)

구분	[2]	[3]	[4]	[5]	[6]	[7]	[8]	[9]	[10]
[1] $LNFE E_{i,t}$	0.160*** (0.000)	0.594*** (0.000)	0.096*** (0.000)	-0.084*** (0.000)	-0.156*** (0.000)	0.089*** (0.000)	0.036*** (0.000)	0.393*** (0.000)	-0.112*** (0.000)
[2] $KIFRS_{i,t}$	1 .	0.139*** (0.000)	-0.008 (0.226)	0.002 (0.804)	-0.067*** (0.000)	0.027*** (0.000)	0.050*** (0.000)	0.207*** (0.000)	0.020*** (0.003)
[3] $LNSIZE_{i,t-1}$	. .	1 .	-0.006 (0.389)	0.009 (0.188)	0.029*** (0.000)	0.002 (0.760)	-0.037*** (0.000)	0.313*** (0.000)	-0.046*** (0.000)
[4] $INVREC_{i,t-1}$	. .	. .	1 .	-0.045*** (0.000)	0.163*** (0.000)	0.018*** (0.006)	-0.008 (0.241)	-0.014** (0.034)	-0.049*** (0.000)
[5] $LIOUID_{i,t-1}$	. .	. .	. .	1 .	-0.213*** (0.000)	0.012* (0.074)	0.047*** (0.000)	0.013* (0.054)	0.024*** (0.000)
[6] $LEV_{i,t-1}$	. .	. .	. .	. .	1 .	-0.492*** (0.000)	-0.119*** (0.000)	-0.138*** (0.000)	0.093*** (0.000)
[7] $ROA_{i,t-1}$	. .	. .	. .	. .	. .	1 .	0.161*** (0.000)	0.065*** (0.000)	-0.103*** (0.000)
[8] $GRW_{i,t}$	. .	. .	. .	. .	. .	. .	1 .	0.055*** (0.000)	0.046*** (0.000)
[9] $BIG4_{i,t}$	. .	. .	. .	. .	. .	. .	. .	1 .	-0.034*** (0.000)
[10] $FIRST_{i,t}$	. .	. .	. .	. .	. .	. .	. .	. .	1 .
[11] $OPINION_{i,t}$	. .	. .	. .	. .	. .	. .	. .	. .	.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 $P < 0.1$ ** : $P < 0.05$, *** : $P < 0.01$)

패널 B.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가설 1)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 $LNFE E_{i,t}$	0.168*** (0.000)	0.603*** (0.000)	0.093*** (0.000)	-0.085*** (0.000)	-0.129*** (0.000)	0.060*** (0.000)	-0.039*** (0.000)	0.386*** (0.000)	-0.147*** (0.000)	-0.079*** (0.000)
[2] $KIFRS_{i,t}$	1	0.166*** (0.000)	-0.021** (0.028)	0.003 (0.768)	-0.084*** (0.000)	0.010 (0.269)	0.027*** (0.004)	0.248*** (0.000)	0.004 (0.639)	-0.052*** (0.000)
[3] $LNSIZE_{i,t-1}$		1	-0.003 (0.720)	0.031*** (0.001)	0.054*** (0.000)	-0.038*** (0.000)	-0.084*** (0.000)	0.311*** (0.000)	-0.075*** (0.000)	-0.025*** (0.007)
[4] $INVREC_{i,t-1}$			1	-0.020** (0.034)	0.163*** (0.000)	0.018* (0.050)	-0.022** (0.017)	-0.021** (0.026)	-0.063*** (0.000)	0.031*** (0.001)
[5] $LIOUID_{i,t-1}$				1	-0.172*** (0.000)	-0.004 (0.696)	0.072*** (0.000)	0.007 (0.446)	0.045*** (0.000)	-0.015 (0.113)
[6] $LEV_{i,t-1}$					1	-0.492*** (0.000)	-0.047*** (0.000)	-0.132*** (0.000)	0.113*** (0.000)	0.192*** (0.000)
[7] $ROA_{i,t-1}$						1	0.099*** (0.000)	0.034*** (0.000)	-0.093*** (0.000)	-0.128*** (0.000)
[8] $GRW_{i,t}$							1	0.005 (0.625)	0.087*** (0.000)	-0.061*** (0.000)
[9] $BIG4_{i,t}$								1	-0.055*** (0.000)	-0.060*** (0.000)
[10] $FIRST_{i,t}$									1	0.124*** (0.000)
[11] $OPINION_{i,t}$										1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 $P < 0.1$ ** : $P < 0.05$, *** : $P < 0.01$)

패널 C.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가설 2)

구분	[2]	[3]	[4]	[5]	[6]	[7]	[8]	[9]	[10]
[1] $LNFEE_{i,t}$	0.221*** (0.000)	0.586*** (0.000)	0.100*** (0.000)	-0.084*** (0.000)	-0.178*** (0.000)	0.115*** (0.000)	0.115*** (0.000)	0.401*** (0.000)	-0.071*** (0.000)
[2] $KIFRS_{i,t}$	1	0.181*** (0.000)	-0.010 (0.281)	0.009 (0.359)	-0.090*** (0.000)	0.030*** (0.001)	0.098*** (0.000)	0.299*** (0.000)	0.057*** (0.000)
[3] $LNSIZE_{i,t-1}$		1	-0.007 (0.439)	-0.013 (0.164)	0.008 (0.407)	0.037*** (0.000)	0.024** (0.012)	0.317*** (0.000)	0.000 (0.976)
[4] $INVREC_{i,t-1}$			1	-0.076*** (0.000)	0.163*** (0.000)	0.019** (0.045)	0.007 (0.462)	-0.007 (0.458)	-0.035*** (0.000)
[5] $LIOUID_{i,t-1}$				1	-0.259*** (0.000)	0.031*** (0.001)	0.013 (0.175)	0.019** (0.040)	-0.009 (0.341)
[6] $LEV_{i,t-1}$					1	-0.493*** (0.000)	-0.189*** (0.000)	-0.143*** (0.000)	0.074*** (0.000)
[7] $ROA_{i,t-1}$						1	0.235*** (0.000)	0.095*** (0.000)	-0.110*** (0.000)
[8] $GRW_{i,t}$							1	0.109*** (0.000)	-0.023** (0.015)
[9] $BIG4_{i,t}$								1	-0.009 (0.358)
[10] $FIRST_{i,t}$									1
[11] $OPINION_{i,t}$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P < 0.1$ ** : $P < 0.05$, *** : $P < 0.01$)

패널 D.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가설 3)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 $LNFEF_{i,t}$	0.124*** (0.000)	0.609*** (0.000)	0.139*** (0.000)	-0.252*** (0.000)	-0.034 (0.193)	0.118*** (0.000)	-0.035 (0.185)	0.371*** (0.000)	-0.134*** (0.000)	0.048* (0.070)
[2] $KIFRS_{i,t}$	1	0.086*** (0.001)	0.017 (0.515)	-0.011 (0.671)	-0.038 (0.152)	0.066** (0.013)	0.034 (0.196)	0.083*** (0.002)	0.002 (0.947)	0.043 (0.106)
[3] $LNSIZE_{i,t-1}$		1	-0.143*** (0.000)	-0.115*** (0.000)	-0.036 (0.175)	0.083*** (0.002)	-0.093*** (0.000)	0.272*** (0.000)	-0.105*** (0.000)	0.006 (0.816)
[4] $INVREC_{i,t-1}$			1	-0.150*** (0.000)	0.203*** (0.000)	0.033 (0.209)	0.021 (0.432)	0.036 (0.172)	-0.017 (0.519)	-0.015 (0.584)
[5] $LIOUID_{i,t-1}$				1	-0.287*** (0.000)	-0.022 (0.411)	0.001 (0.965)	-0.063** (0.017)	0.040 (0.134)	0.024 (0.368)
[6] $LEV_{i,t-1}$					1	-0.425*** (0.000)	-0.076*** (0.004)	-0.087*** (0.001)	0.046* (0.084)	0.039 (0.140)
[7] $ROA_{i,t-1}$						1	0.162*** (0.000)	0.088*** (0.001)	-0.071*** (0.007)	-0.173*** (0.000)
[8] $GRW_{i,t}$							1	0.066** (0.013)	0.078*** (0.003)	-0.112*** (0.000)
[9] $BIG4_{i,t}$								1	-0.035 (0.190)	-0.059** (0.025)
[10] $FIRST_{i,t}$									1	0.034 (0.197)
[11] $OPINION_{i,t}$										1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 $P < 0.1$ ** : $P < 0.05$, *** : $P < 0.01$)

패널 E.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가설 4)

구분	[2]	[3]	[4]	[5]	[6]	[7]	[8]	[9]	[10]
[1] $LNFEF_{i,t}$	0.009 (0.201)	0.578*** (0.000)	0.099*** (0.000)	-0.074*** (0.000)	-0.150*** (0.000)	0.084*** (0.000)	0.029*** (0.000)	0.360*** (0.000)	-0.119*** (0.000)
[2] $KIFRS_{i,t}$	1	0.069*** (0.000)	-0.007 (0.286)	-0.022*** (0.001)	-0.002 (0.803)	0.029*** (0.000)	-0.100*** (0.000)	-0.010 (0.148)	-0.095*** (0.000)
[3] $LNSIZE_{i,t-1}$		1	0.007 (0.320)	0.019*** (0.006)	0.051*** (0.000)	-0.009 (0.194)	-0.045*** (0.000)	0.281*** (0.000)	-0.047*** (0.000)
[4] $INVREC_{i,t-1}$			1	-0.039*** (0.000)	0.160*** (0.000)	0.018*** (0.009)	-0.009 (0.205)	-0.014** (0.050)	-0.051*** (0.000)
[5] $LIOUID_{i,t-1}$				1	-0.208*** (0.000)	0.014** (0.037)	0.051*** (0.000)	0.018*** (0.008)	0.023*** (0.001)
[6] $LEV_{i,t-1}$					1	-0.497*** (0.000)	-0.117*** (0.000)	-0.121*** (0.000)	0.099*** (0.000)
[7] $ROA_{i,t-1}$						1	0.160*** (0.000)	0.059*** (0.000)	-0.106*** (0.000)
[8] $GRW_{i,t}$							1	0.038*** (0.000)	0.041*** (0.000)
[9] $BIG4_{i,t}$								1	-0.044*** (0.000)
[10] $FIRST_{i,t}$									1
[11] $OPINION_{i,t}$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 $P < 0.1$ ** : $P < 0.05$, *** : $P < 0.01$)

패널 F.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가설 5, 가설 6)

구분	[2]	[3]	[4]	[5]	[6]	[7]	[8]
[1] $KIFRS_{i,t}$	0.199*** (0.000)	0.057*** (0.000)	0.181*** (0.000)	-0.090*** (0.000)	0.030*** (0.001)	0.098*** (0.000)	0.078*** (0.000)
[2] $CONFS_{i,t}$	1 .	0.041*** (0.000)	0.238*** (0.000)	-0.013 (0.164)	0.016* (0.094)	0.085*** (0.000)	0.010 (0.280)
[3] $IPO_{i,t+2}$	. .	1 .	0.011 (0.252)	-0.010 (0.307)	0.016* (0.086)	0.036*** (0.000)	0.018* (0.051)
[4] $LNSIZE_{i,t-1}$	. .	. .	1 .	0.008 (0.407)	0.037*** (0.000)	0.024** (0.012)	0.002 (0.859)
[5] $LEV_{i,t-1}$	. .	. .	. .	1 .	-0.493*** (0.000)	-0.189*** (0.000)	-0.019** (0.043)
[6] $ROA_{i,t-1}$	. .	. .	. .	. .	1 .	0.235*** (0.000)	0.016* (0.082)
[7] $GRW_{i,t}$	. .	. .	. .	. .	. .	1 .	0.046*** (0.000)
[8] $\triangle BIG4_{i,t}$	. .	. .	. .	. .	. .	. .	1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2)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 $P < 0.1$ ** : $P < 0.05$, *** : $P < 0.01$)

제 2 절 가설 검증 결과

1.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다변량 회귀분석결과인 <표 5-8>의 가설1, 가설2 검증모형에서 $KIFRS_{i,t}$ 는 단변량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양(+)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 유의하다(유의수준 5%, 1%에서 각각 t-값 2.270, 7.687). 회귀계수값 또한 0.038, 0.135로 가설 2가 높게 나타나 도입이후에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간 차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통제변수의 회귀계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국내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LNSIZE_{i,t-1}$ 는 가설1, 가설2 회귀모형에서 양(+)의 계수를 보이며 t-값은 매우 유의하다. 자산규모는 외감 대상법인에서도 주요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위험 복잡성 변수로 사용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INVREC_{i,t-1}$ 는 예측과 동일하게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를 보이며 가설1, 가설2 회귀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동비율인 $LIQUID_{i,t-1}$ 는 예측과 동일하게 음(-)의 계수를 보이며, 가설 1, 2에서 유의하다. 부채비율인 $LEV_{i,t-1}$ 는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지며, 총자산이익률인 $ROA_{i,t-1}$ 는 가설 1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가설 2에서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ROA_{i,t-1}$ 가 음(-)의 계수 값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우용상·이호영(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의 해석처럼 $ROA_{i,t-1}$ 는 다른 통제변수들에 비해 감사보수를 설명하는 강건한 설명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규모의 성장성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GRW_{i,t}$ 역시 예측과 동일하게 양(+)의 계수를 가지며 가설 1, 2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의 성장은 감사업무의 증가로 이어질 것 같으며, 사업연도말에 추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감사보수에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는 가설1, 2에서 양(+)의 계수를 가지며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BIG4_{i,t}$ 감사인이 $NON-BIG4_{i,t}$ 감사인에 비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RST_{i,t}$ 는 가설 1, 2에서 음(-)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감사의견($OPINION_{i,t}$)은 가설 1, 2에서 음(-)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요인을 통제하고 확인한 결과에서도 연구가설 1,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2. <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표 5-8>의 가설 3 검증모형은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 기업의 회귀모형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KIFRS_{i,t}$ 는 단변량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양(+)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 유의하다(유의수준 1%에서 t-값 2.637). 회귀계수값 또한 0.062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 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이후에 도입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통제변수의 회귀계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국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LNSIZE_{i,t-1}$ 는 양(+)의 계수를 보이며 t-값은 매우 유의하다. 감사 복잡성 변수로 사용한 채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INVREC_{i,t-1}$ 는 예측과 동일하게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를 보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동비율인 $LIQUID_{i,t-1}$ 는 예측과 동일하게 음(-)의 계수를 보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채비율인 $LEV_{i,t-1}$ 는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지며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총자산 이익률인 $ROA_{i,t-1}$ 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ROA_{i,t-1}$ 가 음(-)의 계수 값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의 성장성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GRW_{i,t}$ 역시 예측과 동일하게 양(+)의 계수를 가지며 가설 1, 2, 4에서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양(+)의 계수를 가지며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다수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감사인이 감사인에 비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RST_{i,t}$ 는 음(-)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감사의견($OPINION_{i,t}$)는 가설 1, 2, 4에서 음(-)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가설 3에서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요인을 통제하고 확인한 결과에서도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 <가설 4>에 대한 검증 결과

<표 5-8>의 가설 4의 모형에서는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이후에 감사보수가 오히려 전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의 단변량분석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미도입기업은 기업규모의 증가 등으로 감사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감사위험의 증가한 만큼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타 통제변수의 회귀계수는 <가설 1> 등의 결과와 유사하며, 총자산이익률인 $ROA_{i,t-1}$ 는 모형 1, 3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가설 1에서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기업 규모의 성장성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GRW_{i,t}$ 역시 예측과 동일하게 양(+)의 계수를 가지며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의 성장은 감사업무의 증가로 이어질 것 같으며, 사업연도말에 추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감사보수에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감사의견($OPINION_{i,t}$)은 음(-)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요인을 통제하고 확인한 결과에서도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수가 도입이전과 도입이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4를 지지하지 않는다.

〈표 5-8〉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1~4 검증 결과)

$$LNFE_{i,t} = \beta_0 + \beta_1 KIFRS_{i,t} + \beta_2 LNSIZE_{i,t-1} + \beta_3 INVREC_{i,t-1} + \beta_4 LIQUID_{i,t-1} + \beta_5 LEV_{i,t-1} + \beta_6 ROA_{i,t-1} + \beta_7 GRW_{i,t} + \beta_8 BIG4_{i,t} + \beta_9 FIRST_{i,t} + \beta_{10} OPINION_{i,t} + \Sigma IND_{i,t} + \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1)}$$

$t = 2009, 2011$

종속변수	가설1(N=11247)		가설2(N=11247)		가설3(N=1426)		가설4(N=21068)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i>Intercept</i>	10.654	136.039***	10.885	136.107***	11.427	54.465***	10.716	184.252***
<i>KIFRS_{i,t}</i>	0.038	2.270**	0.135	7.687***	0.062	2.637***	-0.037	-6.267***
<i>LNSIZE_{i,t-1}</i>	0.362	78.452***	0.348	74.760***	0.312	26.998***	0.360	105.187***
<i>INVREC_{i,t-1}</i>	0.181	11.013***	0.189	10.774***	0.422	7.076***	0.173	14.148***
<i>LIQUID_{i,t-1}</i>	-0.007	-13.983***	-0.008	-13.497***	-0.012	-7.746***	-0.007	-17.825***
<i>LEV_{i,t-1}</i>	-0.236	-14.799***	-0.271	-17.860***	-0.135	-2.861***	-0.262	-23.335***
<i>ROA_{i,t-1}</i>	-0.054	-1.306	-0.220	-5.094***	0.132	1.136	-0.152	-4.925***
<i>GRW_{i,t}</i>	0.034	2.298**	0.064	3.810***	-0.021	-0.510	0.054	4.700***
<i>BIG4_{i,t}</i>	0.258	25.288***	0.272	25.237***	0.286	10.837***	0.261	33.726***
<i>FIRST_{i,t}</i>	-0.087	-8.592***	-0.107	-8.744***	-0.093	-3.108***	-0.096	-11.832***
<i>OPINION_{i,t}</i>	-0.054	-3.018***	-0.059	-3.415***	0.365	3.484***	-0.061	-4.931***
<i>ΣIND_{i,t}</i>	포 함		포 함		포 함		포 함	
<i>F_{adj}²</i>	824.332***		831.509***		118.767***		1419.217***	
<i>Adj. R²</i>	0.488		0.490		0.518		0.467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4. <가설 5>와 <가설 6>에 대한 검증 결과

<표 5-9>는 설명변수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식2) 결과이다. 설명변수에 종속기업 또는 상장예정기업 여부가 포함되는 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모형 1, 모형 2, 모형 3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 간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모든 설명변수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종속기업 및 상장 예정기업도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 지배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편의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며, 상장 예정기업인 경우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Hung and Subramanyam(2007)와 유사하게 비상장기업에서도 자산규모($LNSIZE_{i,t-1}$)가 크고 부채비율($LEV_{i,t-1}$)은 낮으며 성장성($GRW_{i,t}$)이 높은 기업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제휴한 Big4 회계법인($\Delta BIG4_{i,t}$)으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기업 일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와는 다르게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산수익률($ROA_{i,t-1}$)이 낮을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종속기업 또는 상장예정기업 여부가 K-IFRS 도입에 미치는 영향
(가설 5, 가설 6 검증 결과)

$$KIFRS_{i,t} = \beta_0 + \beta_1 CONF_{i,t} + \beta_2 IPO_{i,t+2} + \beta_3 LNSIZE_{i,t-1} + \beta_4 LEV_{i,t-1} + \beta_5 ROA_{i,t-1} + \beta_6 GRW_{i,t} + \beta_7 \Delta BIG_{i,t} + \Sigma IND_{i,t} + \epsilon_{i,t} \dots \text{식 (2)}$$

$t = 2011$

종속변수	가설5, 가설6(N=11247)					
	모형1 ³⁾		모형2 ³⁾		모형3 ³⁾	
	계수	Wald통계량	계수	Wald통계량	계수	Wald통계량
<i>Constant</i>	-14.646	249.153***	-18.071	413.158***	-14.678	249.712***
<i>CONF_{i,t}</i>	1.155	178.448***	-	-	1.145	174.788***
<i>IPO_{i,t+2}</i>	-	-	2.365	10.014***	1.836	5.945**
<i>LNSIZE_{i,t-1}</i>	0.505	177.163***	0.661	334.586***	0.507	177.724***
<i>LEV_{i,t-1}</i>	-1.357	83.167***	-1.422	94.132***	-1.360	83.370***
<i>ROA_{i,t-1}</i>	-1.644	14.358***	-1.686	14.948***	-1.662	14.666***
<i>GRW_{i,t}</i>	1.089	52.487***	1.243	71.311***	1.075	50.911***
<i>ΔBIG_{i,t}</i>	1.435	55.410***	1.372	52.231***	1.413	53.533***
<i>ΣIND_{i,t}</i>	포 함		포 함		포 함	
<i>-2 Log Likelihood</i>	4,531.435		4,692.517		4,525.536	
<i>Chi-square</i>	781.822***		620.739***		787.720***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모형2)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주3) 모형1은 종속기업(*CONF_{i,t}*)만 포함하고, 모형2는 신규상장(*IPO_{i,t+2}*)만 포함하였으며,
모형3은 종속기업과 신규상장 둘 다 포함한 결과임

제 3 절 추가분석

1.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연도(2010년)와의 비교

추가분석으로는 2010년과 2011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009년도는 금융위기 직후이고 통제변수를 $t-1$ 회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추가분석 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표 5-10>. 즉,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산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 Big4 감사인 여부 등은 양(+)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동비율, 부채비율, 초도감사 여부 및 감사의견은 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직전연도에는 K-GAAP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지만,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도입 첫해에 비교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K-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연도에는 감사업무가 증대되어 감사보수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표 5-10〉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2010년과 비교분석)

종속변수	가설1(N=11,247)		가설2(N=11,247)		가설3(N=1,426)		가설4(N=21,068)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i>Intercept</i>	10.802	135.769***	10.885	136.107***	11.451	54.212***	10.790	183.694***
<i>KIFRS_{i,t}</i>	0.054	3.122***	0.135	7.687***	0.062	2.595***	-0.012	-2.123**
<i>LNSIZE_{i,t-1}</i>	0.353	75.751***	0.348	74.760***	0.311	26.799***	0.355	103.125***
<i>INVREC_{i,t-1}</i>	0.182	10.545***	0.189	10.774***	0.441	7.330***	0.172	13.703***
<i>LIQUID_{i,t-1}</i>	-0.009	-15.429***	-0.008	-13.497***	-0.014	-9.195***	-0.008	-18.578***
<i>LEV_{i,t-1}</i>	-0.275	-17.903***	-0.271	-17.860***	-0.165	-3.473***	-0.280	-25.293***
<i>ROA_{i,t-1}</i>	-0.186	-4.430***	-0.220	-5.094***	0.342	2.830***	-0.237	-7.636***
<i>GRW_{i,t}</i>	0.087	5.206***	0.064	3.810***	-0.011	-0.257	0.081	6.583***
<i>BIG4_{i,t}</i>	0.266	25.136***	0.272	25.237***	0.281	10.426***	0.266	33.727***
<i>FIRST_{i,t}</i>	-0.080	-7.059***	-0.107	-8.744***	-0.064	-2.175**	-0.097	-11.167***
<i>OPINION_{i,t}</i>	-0.029	-1.567	-0.059	-3.415***	0.468	4.153***	-0.049	-3.893***
<i>ΣIND_{i,t}</i>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F_{adj}</i>	775.141***		831.509***		116.778***		1372.144***	
<i>Adj. R²</i>	0.472		0.490		0.514		0.458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2. 대응표본에 의한 분석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은 기업규모이다. 따라서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응표본을 선정하고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K-IFRS 도입기업과 자산규모가 유사한 기업을 산업별로 2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가설 1, 2 검증모형의 표본수는 도입기업 713개 기업에 대응하는 미도입기업(대응표본) 1,426개 기업을 선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표 5-11>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으나 가설 2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는 2,852기업-년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본분석과 동일하게 음(-)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산규모를 통제한 이후에도 본분석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본분석의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 5-12>은 대응표본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K-IFRS 도입기업과 자산규모가 유사한 기업을 산업-년도별로 2개 기업을 선정하고 분석한 결과에서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으나 가설 2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본분석과 동일하게 음(-)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산규모를 통제한 이후에도 본분석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표 5-11〉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2009년 대응분석)

종속변수	가설1(N=2,139)		가설2(N=2,139)		가설3(N=1,426)		가설4(N=2,852)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i>Intercept</i>	10.764	64.802***	10.755	61.192***	11.427	54.465***	10.466	71.456***
<i>KIFRS_{i,t}</i>	0.005	0.248	0.085	3.734***	0.062	2.637***	-0.024	-1.419
<i>LNSIZE_{i,t-1}</i>	0.354	38.340***	0.354	36.347***	0.312	26.998***	0.374	45.496***
<i>INVREC_{i,t-1}</i>	0.331	7.297***	0.376	7.689***	0.422	7.076***	0.308	7.740***
<i>LIOUID_{i,t-1}</i>	-0.009	-7.437***	-0.008	-5.136***	-0.012	-7.746***	-0.006	-4.863***
<i>LEV_{i,t-1}</i>	-0.210	-5.599***	-0.231	-6.106***	-0.135	-2.861***	-0.255	-7.928***
<i>ROA_{i,t-1}</i>	-0.150	-1.545	-0.161	-1.546	0.132	1.136	-0.292	-3.276***
<i>GRW_{i,t}</i>	0.111	3.117***	-0.058	-1.448	-0.021	-0.510	0.060	1.745*
<i>BIG4_{i,t}</i>	0.234	11.104***	0.271	11.888***	0.286	10.837***	0.225	11.802***
<i>FIRST_{i,t}</i>	-0.115	-4.539***	-0.085	-2.932***	-0.093	-3.108***	-0.104	-4.201***
<i>OPINION_{i,t}</i>	0.041	0.736	0.003	0.051	0.365	3.484***	-0.007	-0.187
<i>ΣIND_{i,t}</i>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F값</i>	195.663***		189.562***		118.767***		268.425***	
<i>Adj. R²</i>	0.542		0.534		0.518		0.549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주3) 대응표본 : 자산규모를 중심으로 2009년 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산업표준분류 대분류 기준으로)을 각각 2개 기업을 선정. 따라서 IFRS도입기업 가설1, 2는 (713*3 = 2,139), 가설 3은 전후기로 본분석과 동일함. 가설4는 (713*4 = 2,852)

〈표 5-12〉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2011년 대응분석)

종속변수	가설1(N=2,139)		가설2(N=2,139)		가설3(N=1,426)		가설4(N=2,852)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i>Intercept</i>	10.672	65.839***	10.900	63.023***	11.427	54.465***	10.463	73.632***
<i>KIFRS_{i,t}</i>	-0.004	-0.210	0.055	2.429**	0.062	2.637***	-0.036	-2.186**
<i>LNSIZE_{i,t-1}</i>	0.359	39.860***	0.346	36.185***	0.312	26.998***	0.373	46.916***
<i>INVREC_{i,t-1}</i>	0.348	7.943***	0.376	8.038***	0.422	7.076***	0.337	8.906***
<i>LIOUID_{i,t-1}</i>	-0.008	-6.996***	-0.010	-6.963***	-0.012	-7.746***	-0.007	-7.000***
<i>LEV_{i,t-1}</i>	-0.150	-4.025***	-0.235	-6.091***	-0.135	-2.861***	-0.229	-7.025***
<i>ROA_{i,t-1}</i>	0.051	0.535	-0.227	-2.129**	0.132	1.136	-0.172	-1.923*
<i>GRW_{i,t}</i>	-0.003	-0.085	0.068	1.743*	-0.021	-0.510	0.042	1.331
<i>BIG4_{i,t}</i>	0.220	10.779***	0.295	13.153***	0.286	10.837***	0.233	12.643***
<i>FIRST_{i,t}</i>	-0.140	-5.748***	-0.026	-0.929	-0.093	-3.108***	-0.087	-3.682***
<i>OPINION_{i,t}</i>	-0.029	-0.464	-0.027	-0.511	0.365	3.484***	-0.085	-1.960*
<i>ΣIND_{i,t}</i>	포함		포함		포함		포함	
<i>F값</i>	206.159***		189.322***		118.767***		280.250***	
<i>Adj. R²</i>	0.555		0.534		0.518		0.560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주3) 대응표본 : 자산규모를 중심으로 2011년 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산업표준분류 대분류 기준으로)을 각각 2개 기업을 선정. 따라서 IFRS도입기업 가설1,2는 (713*3 = 2,139)
가설 3은 전후기로 본분석과 동일함. 가설4는 (713*4 = 2,852)

3. 업종별 분석

〈표 5-13〉에서는 업종별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도소매업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5-13〉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업종별 분석)

종속변수	제조업(N=696)		건설업(N=58)		도소매업(N=146)		기타(N=526)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i>Intercept</i>	8.898	23.217***	8.375	7.208***	9.819	12.153***	9.363	17.333***
<i>KIFRS_{i,t}</i>	0.078	2.591***	0.011	0.107	0.119	1.872*	0.039	0.856
<i>LNSIZE_{i,t-1}</i>	0.326	21.460***	0.354	7.567***	0.292	9.292***	0.299	13.622***
<i>INVREC_{i,t-1}</i>	0.454	5.181***	0.247	1.082	-0.031	-0.216	0.521	4.794***
<i>LIOUID_{i,t-1}</i>	-0.012	-2.970***	-0.005	-1.269	-0.021	-5.828***	-0.009	-3.843***
<i>LEV_{i,t-1}</i>	-0.138	-1.964**	-0.060	-0.332	0.078	0.607	-0.110	-1.353
<i>ROA_{i,t-1}</i>	-0.138	-0.955	0.426	0.745	0.396	0.992	0.560	2.476**
<i>GRW_{i,t}</i>	-0.020	-0.338	0.015	0.089	-0.185	-1.605	0.004	0.051
<i>BIG4_{i,t}</i>	0.273	8.399***	0.191	1.745*	0.251	3.218***	0.290	5.526***
<i>FIRST_{i,t}</i>	0.014	0.383	-0.377	-2.708***	-0.075	-0.904	-0.223	-3.885***
<i>OPINION_{i,t}</i>	0.478	3.993***	0.075	0.196	제 외		0.045	0.213
<i>F값</i>	84.492***		16.999***		30.318***		38.135***	
<i>Adj. R²</i>	0.546		0.737		0.645		0.414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4.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분석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²²⁾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연구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표 5-14>에서는 물가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하였다²³⁾. 이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인 2011년의 감사보수를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인 2010년의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감사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총자산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14>의 결과를 보면 가설 3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경우 감사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가설 4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경우 감사보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2) 이명곤 등(2012)은 2009년과 2011년의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표본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3) 이명곤 등(2012)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의 2009년과 201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97.129와 104로 보고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나누고 100을 곱하여 각 연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2010년의 물가수준으로 표준화시켰다.

〈표 5-14〉 IFRS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물가상승률 분석)

종속변수	가설3(N=1426)		가설4(N=21068)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i>Intercept</i>	9.296	32.174***	8.252	100.954***
<i>KIFRS_{i,t}</i>	0.017	0.711	-0.080	-13.659***
<i>LNSIZE_{i,t-1}</i>	0.312	26.974***	0.360	105.036***
<i>INVREC_{i,t-1}</i>	0.422	7.076***	0.173	14.187***
<i>LIOUID_{i,t-1}</i>	-0.012	-7.830***	-0.007	-17.809***
<i>LEV_{i,t-1}</i>	-0.135	-2.863***	-0.263	-23.350***
<i>ROA_{i,t-1}</i>	0.131	1.132	-0.152	-4.934***
<i>GRW_{i,t}</i>	-0.020	-0.497	0.054	4.727***
<i>BIG4_{i,t}</i>	0.286	10.836***	0.260	33.678***
<i>FIRST_{i,t}</i>	-0.092	-3.096***	-0.096	-11.844***
<i>OPINION_{i,t}</i>	0.366	3.497***	-0.061	-4.932***
<i>ΣIND_{i,t}</i>	포함		포함	
<i>F값</i>	116.462***		1423.353***	
<i>Adj. R²</i>	0.513		0.467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 K-IFRS의 의무 적용이 개시된 2011년에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가설1, 가설 2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 이전연도와 도입 이후연도에 모두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산규모,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비중, Big4 여부 등은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유동성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이익률, 초도감사, 감사의견 등은 유의한 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과 이후를 검증(가설 3, 모형 1)한 결과에서는 도입 이후연도에 감사보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에 Big4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나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이 더 높은 감사품질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응표본을 이용한 추가분석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다만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이유가 지배·종속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장 예정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하므로 가설 5 및 가설 6(모형 2)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상장 현황을 보면 2012년중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상장한 34개사 중 국제회계기준 자발적도입 비상장기업이 5개(14.7%)가 포함되어 있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피감사기업이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중심의 과거 기업회계기준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환경하에서는 피감사기업이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사인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전문가적 회계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하고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이전과 도입 이후연도인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이명곤 등(2012)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은 낮았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부터 이미 Big4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로 감사품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감사보수를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도입 이후에 감사인을 대형 회계법인으로 교체함으로써 감사보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감사보수 결정요인을 통제한 이후 감사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초도감사에 의한 할인 효과로 자산규모의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비상장기업에서도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은 낮은 건실한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도입 비용보다 높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재무보고시스템의 변경 비용 및 감사보수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감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감사시장이 치열한 경쟁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인의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대상이 아님에도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사유는 지배·종속기업간 회계기준 일치 또는 신규 상장 추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기존의 선행연구는 피감사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국제회계기준의 의무 도입 대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회계기준 변경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효과를 자본시장 관점 또는 피감대상기업 입장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감사인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감사인, 피감사기업, 금융당국 등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감사인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를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력 확충 및 감사인 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감사인을 대상으로 소액주주, 채권자 등이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감사기업 입장에서는 회계투명성 및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를 지급하여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Big4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강화로 감사보수 증가에 상응하는 감사품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제도 운용시 대형 감사법인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하여 업

무부담 과중²⁴⁾이 부실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시간의 공시의무가 없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하여 감사시간당 감사보수는 어떠한 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2009년과 2011년의 표본만을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1개 연도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결과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1년 감사보수의 통제변수로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작성된 2010년 재무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감사보수 모형에서 회계기준의 변경효과를 반영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4) 외부감사인은 기업 결산월이 12월에 집중(약 94%)되어 외부감사에 필요한 적정인력 배분 및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12.16), 금감원의 201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개별재무제표 감사는 28.3%(상장사는 58.1%), 연결재무제표 감사는 52.5%(상장사는 61.2%)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중 4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한 비율도 59.4%에 달하고 있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금융감독원,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보도자료, 2007.3.16).
- 금융감독원, 20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보도자료, 2013.7.4).
- 금융감독원, 2010,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
- 강내철, 2008,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 비재무적 접근, 「회계정보연구」 제26호 제2호, pp133-151.
- 곽수근·박종일, 2008,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 연구」 제47호, pp211-246.
- 권수영·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 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pp115-143.
- 권수영·김문철·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pp47-76.
- 김용식·강선아, 2012, 국제회계기준 도입계획이 감사인 선임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pp147-173.
- 노준화·배길수·조성하, 2004,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pp207-230.
- 박상훈·김용식·홍용식, 201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6권 제4호, pp244-472.
- 우용상·이호영, 2007, 보수주의와 감사보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46호, pp99-134.
- 이경태·손성규·최종원, 2007,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pp53-79.

- 이명곤·장석진·조상민, 2012,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감사시간 및 감사 보수, 「회계와 감사 연구」 제54권 제2호, pp473-504.
- 이명곤·이세철·장석진, 2009, 회계처리의 보수성 :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와의 관련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4호, pp1961-1989.
- 이상철·박재완·정갑수, 2011, 초도감사의 감사보수 할인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53호 제2호, pp501-534.
- 이세용·송혁준, 2005,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특별호 제1호, pp239-271.
- 이우재·오광욱·정석우, 2011,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비용과 기업특성,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pp297-327.
- 임석식·김경태·이영한, 2009,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pp127-159.
- 전영순·정도진, 200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주가반응, 「회계와 감사 연구」 통권 제49호, pp241-282.
- 정영기, 2012,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pp293-322.
- 최관·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pp49-75.
- 한혜상·차승민·유용근, 2012,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피감사기업 감사복잡성의 상호작용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3호, pp1-27.

2. 국외 문헌

- Aisbitt, S., 2006, Assessing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to IFRS on Equity: The Case of the FTSE 100, *European Accounting Review*, 15: pp117-133.
- Armstrong C., M. Barth, A. Jagolinzer, and E. Riedl, 2010, Market Reaction to the Adoption of IFRS in Europe, *The Accounting Review*, 85(1): pp31-61.
- Ashbaugh, H., 2001, Non-US Firms' Accounting Standard Cho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0(2): pp129-153.
- Bae, K. H., H. Tan, and M. Welker, 2008, International GAAP Differences : The Impact on Foreign Analysts, *The Accounting Review* 83(3): pp593-628.
- Ball, R., A. Robin, and J. S. Wu, 2003, Incentives versus Standards: Properties of Accounting Income in Four East Asian Compan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6(1-3): pp235-270.
- Barth, M., W. Landsman, and M. Lang, 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pp467-498.
- Bell, T. and J. Griffin, 2012, Commentary on Auditing High-Uncertainty Fair Value Estimat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1(1): pp147-155.
- _____, W. Landsman, and D. Shackelford,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pp34-63.

- Biddle. G., G. Hilary, and R. Verdi, 2009, How doe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Relate to Investment Efficienc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8(2): pp112–131.
- Callao, S., J. Jarne, and J. Laínez, 2007, Adoption of IFRS in Spain: Effect on the Comparability and Relevance of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6(2): pp148–178.
- Chan, D., 1999, Low-Balling and Efficiency in Two-Period Specialization Model of Auditing Competi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1(4): pp609–642.
- Choi, Jong-Hag, Jeong-Bon Kim, and Yoon-seok Zang,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Abnormal Audit Fees, *Working Paper*.
- Christensen, H., E. Lee, and M. Walker, 2007, Cross-section Variation i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Accounting Harmonisation: The Case of Mandatory Adoption in the UK,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42: pp341–379.
- Covrig, V., M. DeFond, and M. Hung, 2007, Foreign Mutual Fund Holdings, and the Voluntary Adop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5(1): pp41–70.
- Cuijpers, R. and W. Buijink, 2005, Voluntary Adoption of Non-Local GAAP in the European Union: A Study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European Accounting Review*, 14(3): pp487–524.
- Daske, H., L. Hail, C. Leuz, and R. Verdi, 2008, Mandatory IFRS Reporting Around the World: Early Evidence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Working Paper*, The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Ding, Y., O. Hope, T. Jeanjean, and H. Stolowy, 2006,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AS :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 Public Policy*, 26(1): pp1–38.
-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2): pp133–151.
- _____, R. LaFond, P. Olsson, and K. Schipper, 2004, Cost of Capital and Earnings Attributes, *The Accounting Review*, 79(4): pp967–1010.
- _____ and D. Simon, 1987,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 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2(1): pp145–157.
- Francis, J. and D. Stokes, 1986,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 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2): pp383–393.
- Gassen. J. and T. Sellhorn, 2006, Applying IFRS in Germany: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Working Paper*,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and WHU 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
- Griffin, P., D. Lont, and Y. Sun, 2009, Governance Regulatory Change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doption, and New Zealand Audit and Non-Audit Fees: Empirical Evidence, *Accounting and Finance*, 49(4): pp697–724.
- Goncharov, I., E. Riedl, and T. Sellhorn, 2011, Fair Value and Audit Fees, *Working Paper*.

- Guerreiro, M., L. Rodrigues, and R. Craig, 2008, The Preparedness of Companies to Adop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ortuguese Evidence, *Accounting Forum*, 32(1): pp75–88.
- Hail, L. and C. Leuz, 2006,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he Cost of Equity Capital: Do Legal Institutions and Securities Regulation Matter?,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3): pp485–531.
- _____, C. Leuz, and P. Wysocki, 2010, Global Accounting Convergence and the Potential Adoption of IFRS by the U.S.(Part I): Conceptual Underpinnings and Economic Analysis, *Accounting Horizons*, 24(3): pp355–394.
- Healy, P., A. Hutton, and K. Palepu, 1999, Stock Performance and Intermediation Changes Surrounding Sustained Increases in Disclosur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3): pp485–520.
- Hope, O., T. Kang, and Y. Zang, 2005, The Bonding Hypothesis Revisited: Do Cross-listing Firms Bond to the Improved Disclosure Environment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oronto and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Horton, J., and G. Serafeim, 2010, Market Reaction & Valuation of IFRS Reconciliation Adjustments: First Evidence from the UK.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5(4): pp725–751.
- Hung, M. and K. Subramanyam, 2007, Financial Statement Effects of Adop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Case of German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2(4): pp623–657.
- Jermakowicz, E., and Gornik–Tomaszewski, S. 2006. Implementing IFRS from the Perspective of EU Publicly Traded Compan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2):

pp170–196.

- Kinnunen, J., J. Niskanen, and E. Kasanen, 2001, To Whom are IAS Earnings Informative? Domestic versus Foreign Shareholders' Perspectives, *European Accounting Review*, 9(4): pp499–517.
- Lambert, R., C. Leuz, and R. Verrecchia, 2007,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5(2): pp385–420.
- Leuz, C., 2003, IAS Versus U.S. GAAP: Information Asymmetry-based Evidence from Germany's New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3): pp445–472.
- _____, and R. Verrecchia, 2000, The Economic Consequence of Increased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3): pp91–124.
- Palmrose, Z., 1986, Audit Fee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1): pp97–110.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1): pp161–190.
- Stanley, J. D., 2011, Is the Audit Fee Disclosure a Leading Indicator of Clients' Business Risk?,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3): pp157–179.
- Vieru, M. and H. J. Schadewitz, 2010, Impact of IFRS Transition on Audit and Non-Audit Fees : Evidence from Small and Medium-Sized Listed Companies in Finland, *The Finnish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59(1): pp11–41.

ABSTRACT

A Study on the Audit Fee and Characteristics of Unlisted Companies, Voluntary Adopters

Kim, Yoon-Jin
Major in Accounting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With foreign exchange crisis as a chance, Republic of Korea decided to introdu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s a part of improving reliability of accounting transparenc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nd made K-IFRS compulsory to all listed companies from 2011. K-IFRS shows great differences from the existing K-GAAP(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that it has principle-based-accounting managemen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basic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this, auditor will increase the audit hours and demand much more audit fee due to increase in audit scope and audit risk on company subject to audit. From the position of company, it can raise funds easily and cheaply fro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 accounting transparencies improve and possibilities of comparison of financial information increase due to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urthermore, when listing in overseas stock market, the company can lighten the burden of remaking financial statements and additional external audit corresponding to the relevant country's

accounting standards, making entry to overseas stock market much easier. Meanwhile, as K-IFRS is based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unlisted companies under rule-subordination relationship will voluntarily adopt K-IFRS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of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twice.

When the audit fee of unlisted company that voluntarily adopted K-IFRS was verified according to audit fee decision model, the stud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audit fee when unlisted company adopted K-IFRS voluntarily compared to the past when they did not. Also, companies who adopted K-IFRS had larger asset scale, favorable debt ratio and return on assets ratio, and while showing characteristic of high portion of audit contract with large accounting firms such as Big4, audit fee was also higher than unlisted companies that did not adopt K-IFRS both in the year before introduction and the year after. Moreove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has appeared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on K-IFRS adoption consolidated subsidiary companies and those preparing for IPO. However, as this study only targeted just one year that institut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ttention needs to be paid in interpretation of result of this study.

Key words: K-IFRS, Audit Fee, Voluntary Adopt, Unlisted Companies